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해양

해양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박수진 · 최석문 · 김대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해양

- 해양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 The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DGs in Maritime Sector -

연구책임자 : 박수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Sujin Park

공동연구자 : 최석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Seokmun Choi

김대경(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Daekyung Kim

2018. 10. 31.

연 구 진

연구책임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최석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김대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심의위원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에 만료 예정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7개가 채택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과 관련된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14번 목표이고,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음.
- 14번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해양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이용개발 압력, 해양생물종 감소 등으로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감소, 불법어업 등 위협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14번 목표와 세부목표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분야 목표인 14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한계를 도출하고, 향후 해양 분야 SDGs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개선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

- 유엔 SDG 14번 목표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주요국의 이행을 위한 논의와 이행 현황에 대해 고찰
- 또한 14번 목표와 관련된 국내 이행 정책과 법제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을 제시

II. 주요 내용

▶ 해양분야 SDGs의 의의와 이행지표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로서 개별 유엔 회원국가의 지속가능전략의 해양부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
-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의 세부목표로 해양오염의 예방 및 감소, 해양생태계의 회복력 증진 및 과학적 협력강화,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및 조치, 지속가능한 어업 및 IUU 근절 등 7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7개 지표를 채택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해양분야 SDGs 이행

- 2017년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가 개최됨.
 - 회의 결과문서로 ① 행동촉구선언문, ② 파트너십 대화 요약서, ③ 자발적 기여 목록이 컨센서스로 채택
- 미국, 일본, 군소도서국가, 아프리카국가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유엔 SDG 14번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 중

- 미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엔 SDG 14번 목표의 세부지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 거버넌스의 결과물을 토대로 생물다양성, 산림 등과 함께 환경보전 측면에서 해양을 관리하여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음.
- 특히 군소도서개발국과 아프리카 개도국은 지역차원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SDGs 14번 목표를 이행하되, 해수면상승, 재해위험 등 기후변화와 해양환경·해양생태계 관리를 밀접하게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해양분야 SDGs 정책 및 법률

-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K-SDGs를 수립하여 국내 여건에 맞게 지표를 설정하여 이행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K-SDGs의 수립과정에서 국내상황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유엔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수정함.
 - 특히 K-SDGs에서는 14번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8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함.
- 유엔 SDG 14번 목표의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① 해양오염 관리체계의 확립, ②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처 관리, ③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 SDGs 이행을 위한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

- 사전예방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복원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필요
 -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쓰레기가 육상으로부터 해양에 유입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차단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
 -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계획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해양생태계를 관리·복원할 필요가 있음.
 - 해양산성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연안 해역 산성화 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 서식처 관리 정책과 해양생태계 정책의 연계성 확보,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수산정책 추진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영세 어업인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필요
 - 수산자원 서식처의 관리정책은 해양생태계 정책과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수산정책은 자원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영세 어민보호와 불법조업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 어선 감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상호지지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임.
- 개도국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함께 지원사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이 있어야 해양과학기술 협력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해양수산개도국의 협력·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의 구축하여 개도국의 지원현황 파악과 개별 개도국별 수요에 맞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UN SDGs 해양분야 14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국내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해양분야와 관련된 정부의 세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SDGs 14번 목표의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이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제어 : SDGs 14번 목표, K-SDGs,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해양과학기술의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Background of the Study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was adopted with 17 goals in September 2015, replac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cheduled to expire in 2015.
 - Among 17 goals of SDGs, the Goal 14 relates to the marine, which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The Goal 14 pursues the 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the balance between use and development of marine resources and sustainability.
- Regarding the means to implement the Goal 14,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implementation policy appropriate for Korea's situation.
 - The ocean has played the role of providing various goods and services and threats are increasing due to the pressure of use and development and the decrease of marine species.
 - In order to cope with threats such as ocean acidification, marine biodiversity loss and illegal fishing, the Goal 14 is introduced and it is appropriate to formulate implementation policy suitable for Korea's situation since every country has different circumstance.

▶ Purpose of the study

- To draw up the limitations of domestic policy and legal system designed to fulfill the Goal 14 of SDGs and to propose recommendations for policy and legal system,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Goal 14.
-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and main content of the Goal 14 of SDGs and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progress and discussions for the implement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major countries.
-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domestic implementation policy and legal system related to the Goal 14 and to suggest options for better implementation.

II. Major contents

▶ Significance and implementation indicators of SDGs in the marine sector

- The Goal 14 of SDGs is a common goa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by 2030 and is an important basis for the sustainable strategy for individual UN member states in their marine sector policies.
- The UN sets 7 specific targets and 7 indicators for the Goal 14 of SDGs including prevention and reduction of marine pollution, enhancement of resilience of marine ecosystems and strengthening of scientific cooperation, minimization of marine acidification impacts, sustainable fisheries and IUU fishing eradication.

▶ Implementation of the Goal 14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The UN High-level Ocean Conference was held in 2017 to discuss the implementation of the Goal 14 of SDGs.
 - Three outcome documents were adopted by consensus: ① a declaration for action, ② a summary of partnership dialogue, and ③ a voluntary contribution list.
-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small island states, and African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implement the Goal 14 of SDGs.
 - The United States has established a system for implementing SDGs and has review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indicator for the Goal 14 of SDGs.
 - Japan has made efforts to achieve SDGs by establishing governance at the government level and managing oceans together with biodiversity and forestry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 conservation.
 - The small island countries and African countries have pursued policies and implemented the Goal 14 of SDGs through establishing regional partnerships, and also have carried out policies closely linked between the 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and climate change.

▶ Domestic policies and laws on marine SDGs

- In order to implement the Goal 14 of SDGs, the Korean government have established K-SDGs, has revised the detailed objectives and indicators of UN SDGs and added 8 indicators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circumstances.

-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i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relevant policies for achieving the Goal 14 of SDGs.
- MOF has carried out policies for implementing SDGs regarding marine pollution management system,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 and habitat for fisheries resources, and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based on the laws to deal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ecosystem, 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and proper support of small-scale fisheries.

▶ Recommendation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Goal 14 of SDGs

-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ecosystem through precautionary marine litter management policies and systemic restoration of marine ecosystems.
- Need to shift the policy towards prevention, which progressively blocks the inflow of pollution from land into the ocean.
- Need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restore the marine ecosystem through ecosystem-based marine spatial planning and tidal-flat ecosystem restoration projects.
- Need to identify the causes of changes in the marine ecosystem from ocean acidification and to minimize the impact of ocean acidification by developing technologies for preventing acidification in coastal waters.

- It is necessary to manage fisheries resources sustainably and secure adequate support for small-scale fishermen by securing connectivity between fisheries resource habitat management policies and marine ecosystem policies, and promoting integrated fisheries policies.
 - The improvement is required for the management policy of marine resources habitat since there exists lack of connectivity to marine ecosystem policy.
 - As for the fisheries policy, a mutually supportive and integrated approach is necessary since various policies have been pursued at the same time.

-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with develop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check the status of the support projects, so as to facilitate the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nd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 Need to mobilize legal and policy support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with developing countries.
 - Through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cooperative projects appropriate for the needs of individual developing countries can be identified and conducted.

III. Expected Effect

- This study can suggest policy and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and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Goal 14 of SDGs and can become the useful reference for relevant study and policy formulation by analyzing th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the domestic situation designed to implement the Goal 14 of SDGs.

- This study also can play a role as a means to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achieve the implementation of the Goal 14 of SDGs by examin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Goal 14 based on detailed government data related to the maritime sector and presenting future directions for implementation.

- ▶ **Key words:** SDG goal 14, K-SDGs, con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ecosystem, sustainable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proper support of small-scale fisheries, cooperation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and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 | |
|----------|----|
| 요약문 | 5 |
| Abstract | 11 |

제1장 서론 / 21

| | |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
| 1. 연구의 배경 | 23 |
| 2. 연구의 필요성 | 24 |
| 3. 연구의 목적 | 24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5 |
|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5 |
| 2. 선행연구의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25 |

제2장 해양분야 SDGs의 의의와 이행지표 / 27

| | |
|--------------------------------|----|
|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요 | 29 |
|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념과 구성 | 29 |
|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채택 | 30 |
| 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메커니즘 | 32 |
| 제2절 해양분야 유엔 SDGs 목표 | 33 |
| 1. 유엔 SDG 14번 목표의 개념 | 33 |
|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목표의 세부목표 및 지표 | 35 |
| 3. 2018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 | 38 |

제3장 국제사회의 해양분야 SDGs 이행 / 41

| | |
|---------------------|----|
| 제1절 2017 유엔 고위급해양회의 | 43 |
| 1. 개요 | 43 |
| 2. 주요 결과 | 44 |

| | |
|-----------------------------|----|
| 제2절 주요국의 해양분야 SDGs 이행 | 48 |
| 1. 미 국 | 48 |
| 2. 일 본 | 51 |
| 3. 군소도서개발국 및 아프리카 개도국 | 54 |
| 4. 정책적 시사점 | 60 |

제4장 국내 해양분야 SDGs 정책 및 법률 / 63

| | |
|--|-----|
| 제1절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K-SDGs의 수립 | 65 |
| 1. K-SDGs 이행전략 수립 논의 경과 | 65 |
| 2. K-SDGs 이행전략의 원칙 | 69 |
| 3. K-SDGs의 비전, 세부목표와 지표 | 70 |
| 4. K-SDGs 상 해양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 71 |
| 제2절 해양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 73 |
| 1. 해양오염 관리체계의 확립 (14.1번 목표) | 73 |
| 2.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처 관리 (14.2번 목표) | 81 |
| 3.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14.3번 목표) | 83 |
| 4.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4.4번 목표) | 85 |
| 5.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14.5번 목표) | 87 |
| 6.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 (14.6번 목표) | 90 |
| 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의 확대 (14.7번 목표) | 91 |
| 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14.B번 목표) | 91 |
| 제3절 해양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법률 | 92 |
|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 94 |
|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 99 |
| 3.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 | 107 |

제5장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 / 111

| | |
|--|-----|
| 제1절 해양분야 SDGs 이행정책의 한계 | 113 |
| 1.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정책의 한계 | 113 |
| 2. 수산정책의 한계 | 115 |
| 3. 해운항만정책의 한계 | 116 |
| 4. 법제도적 한계 | 117 |
| 제2절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 | 121 |
|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 121 |
|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 122 |
| 3. 해양과학기술의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 | 123 |
| 4. K-SDGs 이행점검·평가체계 구축 | 124 |
| 제3절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124 |
|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 124 |
|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 125 |
| 3. 해양과학기술 협력과 개도국의 지원 | 126 |
| 4.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 | 127 |
| 참고문헌 | 129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2016-2030)’는 2015년에 만료 예정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대체하는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는 단순히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 거버넌스 등 사회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2001-2015)는 빈곤퇴치 등 사회분야 중심으로 정부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회발전,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사회, 환경 전반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측면, 즉 경제, 사회, 환경 측면과 관련된 문제를 17개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인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중 해양과 관련한 목표는 14번 목표이다. 14번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존 및 해양자원의 이용·개발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

서 주목할 점은 유엔 SDGs의 17개 목표에 대해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연계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연구의 필요성

세계야생기금(WWF)에 따르면 해양은 연간 미화 2.5조 달러 가치로 추정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바, 이는 전 세계 7번째로 큰 국가경제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양 생물자원에 대한 과잉어획 등 이용개발 압력과 해양생물종 감소 등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양환경은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 해양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대기를 통해 유입되는 이산화탄소에 따른 해양산성화, 과잉어획, 과도한 해양개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14번 목표의 세부목표와 이행을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 있고, 해양산성화, 해양생물다양성 감소, 불법어업, 해양쓰레기, 연안침식 및 해수면 상승, 해수온 상승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류의 중대한 도전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관련 이행정책과 법제도도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에 유엔 SDG 14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이행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유엔 SDG 14번 목표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주요국의 이행을 위한 논의와 이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4번 목표와 관련된 국내 이행 정책과 법제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분야 14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를 도출하고, 향후 해양 분야 SDGs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개선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유엔 고위급해양회의,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국의 유엔 SDG 14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동향과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기후변화 정책,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정책, 해양과학기술 및 개도국 지원정책, 불법어업 대응 등 수산정책 등 관련 이행현황과 주요 법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은 국내외 관련 논문, 보고서, 정책자료 등 문헌분석을 기초로 하며, 비교법적 분석방법을 실시한다.

2. 선행연구의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구 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연구내용 |
| 주요 선행 연구 | 1 | - 지속가능성과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법적 고찰, 함태성, 환경법연구 제34권 제2호, 2012 - 조력발전 건설과 녹색성장 정책, 해양환경정책 및 법제 개선방향 제시 | - 문헌조사 - 녹색성장정책과 조력발전소 건설 - 조력발전소 건설과 환경사회적 영향 -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조력발전 건설 |
| | 2 | -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윤유리, 한국국제협력단, 2017 - 2017년 UN의 고위급정치포럼 개최결과 분석과 각국의 SDGs 이행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SDGs 이행의 방향 설정 지원 | - 문헌조사 - 2017년 UN 고위급정치포럼 개최결과 분석 - 주요 SDGs 이행과정 검토 - 자발적 국별 검토 비교 분석 |

| 구 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연구내용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부문 기후변화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전문가워크숍, 업무협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와 해양정책 -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해양정책 -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해양정책 분석 - 신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의 개선방안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 최종 지표 내용과 이행의 실제, 홍은경, 국제개발협력 제2권, 한국국제협력단, 2016.7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제시된 환경 관련 목표 고찰을 통해 국제사회의 환경이슈를 파악하고, 세부목표와 이행지표의 개선방향을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 본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분야 유엔SDGs 목표의 주요내용과 국제사회의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이행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분야 SDGs의 의의와 과제 - 국제사회의 해양분야 SDGs 관련 논의 - 해양분야 SDGs 세부목표 관련 국내 이행여건 및 추진현황 -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

제2장 해양분야 SDGs의 의의와 이행지표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요

제2절 해양분야 유엔 SDGs 목표

제2장

해양분야 SDGs의 의의와 이행지표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요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념과 구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유엔 SDGs)’는 2015년에 만료 예정이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대체하는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 결의 70/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인류의 공동목표이다. 유엔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측면, 즉 경제, 사회, 환경 측면과 관련된 문제를 17개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2016-2030)



자료 :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 http://ncsd.go.kr/app/sub02/20_tab2.do. (검색일자 : 2018.09.10.)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사회개발 목표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과 달리 유엔 SDGs는 빈곤을 근본적이고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사회 개발 목표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불평등, 경제성장 관련 보편적 목표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목표의 적용대상도 개도국을 중심으로 하나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표 2-1>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비교

| 구분 | MDGs(2011~2015) | SDGs(2016~2030) |
|----|---------------------|------------------------------------|
| 구성 | 8개 목표 + 21개 세부목표 |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
| 대상 | 개도국 | (보편성) 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
| 분야 | 빈곤·의료·교육 등 사회 분야 중심 | (변혁성)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 통합 고려 |
| 참여 | 정부 중심 | (포용성)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

자료 :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 http://ncsd.go.kr/app/sub02/20_tab2.do. (검색일자 : 2018.09.10.)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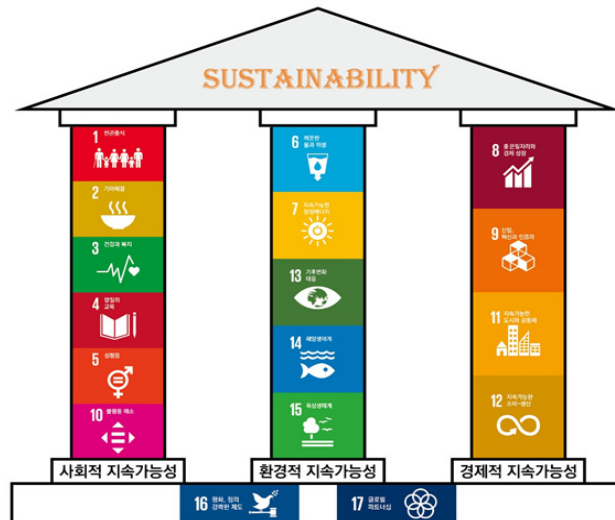
2015년 제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엔 SDGs가 최종적으로 채택되기까지 여러 회의 및 보고서를 통해 유엔 SDGs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었다. 2012년 6월에 UNDESA와 UNDP를 중심으로 2015년 이후 작업반(Post-2015 Task Team)을 구성하여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다.

이후 국제사회는 새로운 개발협력 목표의 기본적 틀로 3개 기본원칙(인권, 평등, 지속가능성)과 4대 주요 방향(평화 및 안보, 사회개발, 포괄적 경제개발, 환경 지속가능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Post-2015 유엔 개발의제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2013년 5월에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27명의 인사로 구성된 “유엔 고위급패널”을 설립(12.7월)하였으며, 동 패널은 Post-2015 개발의제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보고서인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c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를 작성하였다. 이후 2014년 7월에 ‘지속가능발전 목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의 6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결과인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를 담은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최종적으로 2015년 9월에 유엔총회 정부간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 내용이 포함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화: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문서¹⁾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림 2-2> 유엔 SDGs의 비전과 3대 지속가능성

지구촌 생명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UN의 글로벌 비전



자료 : 한국행정학회, K-SDGs 수립경과와 세부목표, 지표(안) 발표자료, 2018.6.21., p.4.

1) UNGA, A/RES/70/1.

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메커니즘

유엔 SDGs 목표 이행에 대한 일차적 책무는 각 회원국에게 있으며, SDGs를 각 국가개발계획에 주류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유엔 SDGs 이행에 대한 자발적 국별 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제출하고 있다.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장관급 회의에서 발표되는 VNR을 2016년도에는 22개 국가가 제출했으며, 2017년도에는 약 2배 증가한 43개 국가가 제출하였다.

글로벌 차원의 SDGs 후속조치 및 이행 검토는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중심이 되어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그리고 기타 관련 기구와 포럼과의 협력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4년마다 국가 수장급 회의 시기에 맞춰 “세계 지속가능한발전 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가 발간되며, 이는 HLPF 회의의 기반이 되는 중요 정책 자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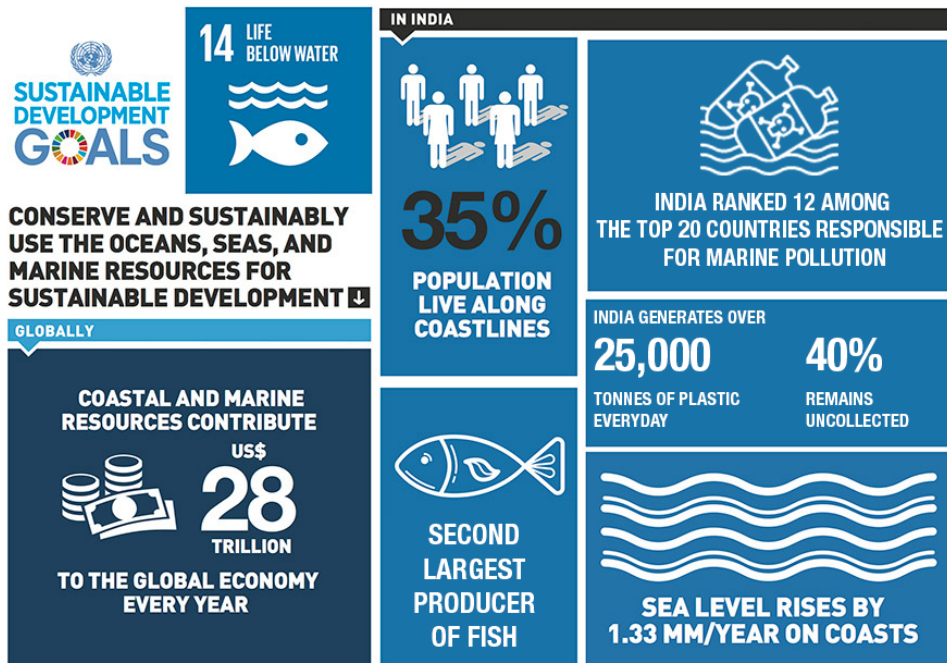
또한 매년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와 유엔 사무총장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개발 지역포럼(Regional Forums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SDGs의 이행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엔의 5개 지역위원회(ECA, ECLAC, ESCAP, UNECE, ESCWA)가 각각의 지속가능개발 지역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2절 해양분야 유엔 SDGs 목표

1. 유엔 SDG 14번 목표의 개념

해양은 지구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전체 지구 물자원의 97%, 부피기준으로 지구 생물공간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 생태계에서 중요하다. 또한, 매년 해양과 연안자원 및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3조 달러 또는 전 세계 GDP의 약 5%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은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0%를 흡수함으로써 지구온난화 영향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양어업(marine fisheries)에 직·간접적으로 2억 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림 2-3> 유엔 SDG 14번 목표와 관련된 여건



자료 : <http://in.one.un.org/page/sustainable-development-goals/sdg-14/> (검색일자 : 2018.8.3.)

그러나 전 세계 해양의 30%가 오염, 과잉어획, 연안서식지 훼손 등 인간활동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²⁾ 이에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로 ‘해양,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Conservation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을 채택하였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이며, 개별 유엔 회원국가의 지속가능전략의 해양부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의 세부목표로 ① 해양오염의 예방 및 감소, ② 해양생태계의 회복력 증진 및 과학적 협력강화, ③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및 조치, ④ 지속가능한 어업 및 IUU 근절 등을 설정하고 있다.

<그림 2-4> 유엔 SDG 14번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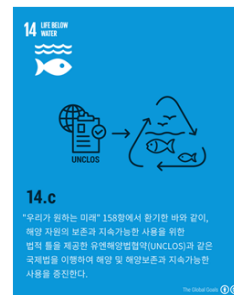
UN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상 해양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2016-2030 UN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서, 인류보편적문제, 지구환경문제, 경제사회문제 등 17개 목표 설정
- 기아 종식, 교육의 질, 성평등, 깨끗한 물, 불평등 감소, 기후 보존 활동,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 등 다양한 전지구적 의제
- **목표 14 수중 생활(Life Below Water)**
: 특히 해양생태계 연관성 높은 의제로 주목할 필요

목표 14. 해양생태계의 보호

-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14.1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 예방 및 감소
- 14.2 2020년까지 해양생태계 회복력 증진, 과학적 협력 강화
- 14.3 해양산성화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 최소화 및 조치
- 14.4 2020년까지 어획량 규제, IUU 종식, 과학기반관리계획 등
(주요 세부목표)
- 14.a 정부간해양위원회 지침에 따른 해양기술이전
- 14.b 영세 어업인의 해양자원 및 시장접근 보장
- 14.c 유엔해양법협약 이행을 통한 해양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자료 : 박수진 외(2018), 해양환경외교의 과제 및 대응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자료.

2)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oceans/>. (검색일자 : 2018.08.10.)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목표의 세부목표 및 지표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의 이행을 위해 <표 2-2>와 같이 해양쓰레기, 해양 산성화, 해양보호구역, 불법어업 등 7개 세부목표와 7개 지표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목표 14.1은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 영양염류의 오염 등을 포함하여 육상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대폭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목표 14.2는 2020년까지 해양 및 해안생태계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함으로써, 해양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해양 및 연안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보호, 그리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한 복원 조치를 시행한다.

세부목표 14.3은 모든 차원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실가스의 배출증가는 연안침식, 해수내 열층 형성뿐만 아니라,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기능을 감소시키고 해양산성화를 야기하고 있다.

14.4는 2020년까지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지속가능 어획량’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최단시간 내 수산자원의 복원을 위한 효과적인 조업 규제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 파괴적 어업관행의 근절하는 것이다. 14.4의 세부목표는 이를 위하여 과학적인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세부목표 14.5는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최소 10%의 연안 및 해양지역을 보호구역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이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2010년 일본 나고야 총회에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2011-2020)’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세부목표 14.6은 2020년까지 과잉생산능력과 남획을 조장하는 어업 보조금 금지, 불법 조업을 야기하는 보조금의 근절,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식하여야 하며, 과잉생산능력, 남획, 불법조업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세부목표 14.6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WTO 수산보조금 협상과의 연계성을 강조한 것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사회경제적, 환경적, 포괄적인 목표라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세부목표 14.7은 2030년까지 어업, 농업, 관광 등을 통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 등을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함으로써 ‘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인 혜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목표이다. 이 목표는 14.A, 14.B 14.C의 세부목표도 구성되는데, 14.A는 개도국에 대한 과학지식 및 기술능력 배양과 과학기술이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14.B는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에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의 확보와 제공을 중요시하고 있다.

끝으로 세부목표 14.C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투영되어 있는 해양과 그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정한 체계를 포함한 국제법의 전면적인 이행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심해저,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제문서의 성안에 대한 유엔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2-2> 유엔 SDG 14번 목표의 세부목표 및 지표

|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 | |
|---|---|----------------|----------------------------------|
| 세부목표(Targets) | | 지표(Indicators) | |
| 14.1 | ○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 등을 포함하여, 특히 육상활동으로 | 14.1.1 | ○ 연안 부영양화 및 유동 플라스틱 쓰레기의 잔해밀도 지수 |

|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 | |
|---|---|----------------|---|
| 세부목표(Targets) | | 지표(Indicators) | |
| |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의 예방과 대폭적인 경감 | | |
| 14.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회복력 강화를 통해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과 연안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보호 ○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복원 조치의 시행 | 14.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비율 |
| 14.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차원에서 과학협력 증진 등을 통한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 14.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된 대표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성도(pH) |
| 1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지속가능 어획량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최단시간 내 수산자원의 복원을 위한 효과적인 조업 규제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 파괴적 어업관행의 근절과 이를 위한 과학적인 관리계획의 시행 | 14.4.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이내의 어족자원 비율 |
| 1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최소 10%의 연안과 해양에 대한 보전 | 14.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지역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 |
| 14.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과잉생산능력과 남획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 불법조업을 야기하는 보조금의 근절 ○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하는 가운데, 과잉생산능력, 남획, 불법어업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 제한 | 14.6.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IUU)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international instruments)의 이행 정도에 대한 국가별 진전 |
| 1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어업, 농업, 관광 등을 통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 등을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함 | 14.7.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소도서개발국(SIDS),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의 GDP 대비 지속가능한 어업의 비율 |

|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 | |
|---|---|----------------|--|
| 세부목표(Targets) | | 지표(Indicators) | |
| | 으로써 군소도서개발국(SIDs)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혜택 증대 | | |
| 14.A | ○해양의 건강성을 높이고, 해양생물다양성의 개발도상국 특히, SIDs와 최빈국 발전기여도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지식 배양, 연구능력 개발 및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해양기술의 이전 | 14.a.1 | ○해양기술 부문 연구에 할당된 전체 연구예산의 비율 |
| 14.B |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 확보·제공 | 14.b.1 | ○국가별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의 접근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해주는 법적·규제적·정책적·제도적 기반의 실행단계의 국가별 진전 |
| 14.C | ○「유엔해양법협약」에 투영되어 있는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체계를 포함한 국제법의 전면적인 이행 | 14.c.1 |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을 이행하는 법적·정책적·제도적 기반, 그리고 해양관련 수단의 비준, 수용하고 이행하는데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

자료 : K-SDGs 작업반, 「유엔 SDGs 목표 및 지표 해석본(안)」, 2018을 기초로 저자가 수정·보완.

3. 2018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

2018년에 유엔에서 발간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보고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에서는 각 부문별 2030 목표의 진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00개국 이상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³⁾ 동시에 유엔은 부문별 진전 상황을 분석하였는데, 2030년까지 12년

3) UN,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8, p.3, <https://unstats.un.org/sdgs/files/report/2018/The Sustainable DevelopmentGoalsReport2018-EN.pdf> (검색일자 : 2018.11.1.)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국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독려했다.

유엔은 2030 아젠다의 이행을 위한 유엔 개발체계를 전환하기 위하여 개혁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으며, 이니셔티브는 보다 효과적(effective)이고 응집력이 있으며(cohesive), 책임있는(accountable)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은 2018년 이행보고서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해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노력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유엔도 회원국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해양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인 14번 목표인 ‘해양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과잉어획(over fishing), 해양산성화의 증가(growing ocean acidification), 연안 부영양화(coastal eutrophication)의 악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전략과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해양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구역의 확대, 연구능력의 강화(intensification), 해양과학기술 분야 기금의 확대는 해양자원의 보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내의 글로벌 해양어류자원량의 공유는 1974년의 90%에서 2013년 69%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그 추세는 둔화되어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 전 세계 공해와 연안지역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해양산성화의 수준은 평균 약 26% 증가하였으며, 해양생물의 자연변이성은 이전에 경험한 수준을 넘는 단계까지 노출되어 있다.
- 오염과 부영양화⁵⁾로 인해 연안수질에 관한 글로벌 추세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

4) *Ibid.*, p.4.

5) ‘부영양화(eutrophication)’는 강, 바다, 호수 등의 수중생태계에 유입된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가축의 배설물 등의 유기물질이 유입되어 물속의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물질이 증가하게 되며, 영양물질의 증가는 조류의 급속한 증식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부영양화라고 일컫는다. 수중생태계의 과도한 영양물질의 증가는 흔히 육지에서 유입된 물질로 인해 발생되며 고밀도의 식물성장과 산소부족은 수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조류의 급격한 증식으로 인해 해수의 색이 변하게 되는 것을 ‘적조’라고 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70275&cid=40942&categoryId=32411>. (검색일자 : 2018.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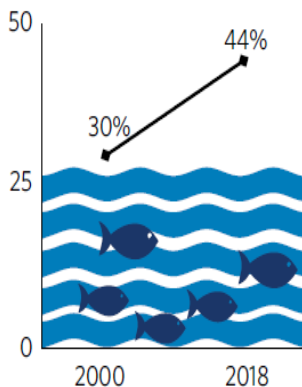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노력을 집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2050년까지 광역해양 생태계의 20%가 연안부영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1월 기준으로 해안선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국가관할권 이내 해양의 16%(22백만 km²)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2010년 보다 2배 증가한 것이다. 해양생물다양성 핵심지역(marine key biodiversity areas, KBAs)의 범위는 2000년의 30%에서 2018년의 44%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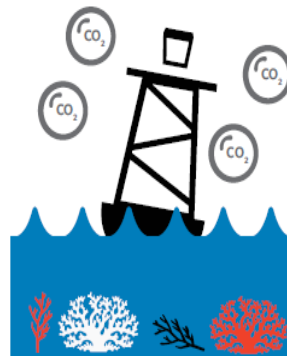
한편, 2017년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수산업 분야의 경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92개 국가와 유럽연합을 포함한 설문 응답자의 70%가 소규모 수산업 분야를 특별히 고려한 규제, 정책, 법률, 계획 또는 전략을 도입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⁶⁾

<그림 2-5> 2018 유엔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14번 목표의 진전

Mean coverage of marine KBAs increased between 2000 and 2018



Open ocean sites show current levels of acidity have increased by 26 per cent since the star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자료 : UN,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8, p.11,

<https://unstats.un.org/sdgs/files/report/2018/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Report2018-EN.pdf> (검색일자 : 2018.11.1.)

6)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역, 「2017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보고서」, 2017, 6, p.19.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장

● 국제사회의 해양분야 SDGs 이행

제1절 2017 유엔 고위급해양회의

제2절 주요국의 해양분야 SDGs 이행

제3장

국제사회의 해양분야 SDGs 이행

국제사회와 개별국가들은 14번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7년에 개최된 유엔 SDG 14번 이행 지원을 위한 유엔 고위급해양회의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군소도서국가, 아프리카국가 등의 이행 동향을 살펴 보도록 한다.

제1절 2017 유엔 고위급해양회의

1. 개요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 중 해양수산 분야 관련 특정 목표인 유엔 SDG 14번의 이행방안을 단독 의제로 논의하기 위해 유엔 고위급해양회의가 2017년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2015년 12월 22일 제8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70/226에 근거하며,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컨퍼런스(UN Conference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DG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세계해양의 날(6.8)을 전후로 2017년 6월 5~9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피지와 스웨덴 대표가 공동의장을 수행하고, 유엔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 부문 관계자 약 1,500여명이 참석하였다.

2017년 유엔 고위급해양회의에서는 정부간 합의문인 “행동촉구선언(Call for Action)”의 문안 협의와 파트너십 대화(Partnership Dialogue)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차기 회의는 포르투갈과 케냐는 차기 해양회의를 2020년에 개최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2. 주요 결과

회의 결과문서로 ① 행동촉구선언문(Call for Action), ② 파트너십 대화 요약서(Report of Partnership Dialogues), ③ 자발적 기여(Voluntary Commitments) 목록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가. 행동촉구선언문

유엔 SDG 14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인 ‘행동촉구선언문(Our Ocean, Our Future: Call for Action)’은 총 3차례의 문안협의를 거쳐 도출된 유엔 고위급해양회의의 최종결과문서이다.⁷⁾ 선언문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제12조항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의 중요성 인식
- 파리기후협정 이행의 중요성
- SDG 14를 포함한 SDGs 이행의 중요성
- LDC, 내륙국 SIDS, 아프리카국들의 특별한 상황 고려 필요
- 국제협력 및 통합적이고 범주제 접근방식의 중요성
- 과학연구 등을 통한 해양 지식 구축의 필요성
-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 이행을 통한 해양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촉구 필요

7) UNGA A/RES/71/312, Our Ocean, Our Future: Call for Action,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291421/files/A_RES_71_312-EN.pdf, p.1 (검색일자 : 2018.10.1.)

-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SAMOA Pathway 등 이행의 중요성
- 역량구축·기술이전·재원확보 등의 중요성
- 13번 조항에서는 총 22개의 구체적인 행동방안이 제시됨.
- SDG 14 이행, 파트너십 강화, 해양인식 제고 및 교육, 해양과학연구 지원강화,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및 오염물질 저감, 해양 및 해양산성화에 대한 복원력 및 대응력 증진,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실현(IUU, 어획증명제도, 소규모 전래어민 등), 지속가능한 해양기반 경제 추구, 개도국의 재정적 지원 강화, BBNJ 논의 적극 참여 등의 주제와 관련된 행동방안 제시

나. 수산보조금

WTO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하여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있었다. 즉, EU는 2030 어젠다에 규정된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신속한 종결 의무 존중을 포함시킬 것으로 제안했으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이를 지지하였다. 반면 미국은 제3차 문안협의 중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인 점을 고려하여 WTO 관련 언급 자체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미국은 컨센서에 동참하되 행동촉구선언은 WTO 협상에 대한 어떠한 법적 지위도 갖지 못하며, WTO는 UN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적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고, 러시아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 ※ 행동촉구선언문 13(p)조항: “Act decisively to prohibit certain forms of fisheries subsidies which contribute to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eliminate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nd refrain from introducing new such subsidies, including through accelerating work to complete negotiation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n this issues, recognizing that appropriate and

effective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and least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ose negotiations”

다. 파리기후협정

대부분의 국가들이 파리기후협정 이행 의지를 표명한 반면 미국은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미국이 파리기후협정 탈퇴 및 재협상 의사를 표명했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행동촉구선언문 4조항에는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악영향에 특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한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면서, 특히 ‘파리기후협정의 중요성(“We recognize, in this regard, the particular importance of the Paris Agreement adopted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강조하였다.

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유엔해양법협약(UNCLOS)와 관련한 문구에도 국가 간 의견이 대립하였다. 특히, 아이슬란드, 호주, EU, 바베이도스, 뉴질랜드, 스페인, 베트남, 영국,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은 UNCLOS가 해양 관련 모든 활동(all activities in the oceans and seas)의 법적 틀(legal framework)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베네수엘라, 터키, 중국 등은 이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결국, 행동촉구선언문에는 “the legal framework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oceans and their resources”라는 표현으로 절충되었다.⁸⁾

마.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중국과 G77은 SDG 이행에 있어서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며,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BDR)’원칙을 강조하였다.

8) 외교부, “SDG 14 이행지지를 위한 유엔 고위급회의(Ocean Conference) 결과보고”, 2017.6.

이와 관련하여, 행동촉구선언문 7조항에 CBDR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taking into account different national realities, capacities and levels of development and respecting national policies and priorities”로 중국+G77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등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역량 강화, 기술이전,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으며, 행동촉구선언문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다만, 미국은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 파트너십 대화(Partnership Dialogue)

SDG 14번 목표와 관련된 7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컨퍼런스 최종보고서⁹⁾에 논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파트너십 대화에는 최대 25개국과 15 참가기관이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각 주제별로 공동의장(2명)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각각 선출되었는데, 파트너십 대화의 구체적인 주제로는 1) 해양오염 대응, 2) 해양 및 연안 생태계 관리, 보호, 보존, 재건(SDGs 목표 14.2, 14.5와 연관), 3) 해양산성화 대응 및 최소화(SDG 목표 14.3와 연관) 4)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SDGs 14.4, 14.6와 연관), 5) SIDS와 LDCs에 대한 경제적 혜택 강화 및 영세어업자에게 해양자원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공(SDGs 14.7, 14.b와 연관), 6) 과학적 지식 증진과 연구역량 및 해양기술이전 강화(SDG 14.a와 연관), 7) 유엔해양법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 이행을 통한 해양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증진 등이 선정되어 집중 논의되었다.

사. 자발적 공약(Voluntary Commitment)

유엔 사무국은 온라인 플랫폼¹⁰⁾을 개설하여 이해관계자들이 SDG 14 이행을 위한 자발

9)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A/CONF.230/14)

10) <https://oceanconference.un.org/commitments/> (검색일자 : 2018.09.10.)

적 공약을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컨퍼런스가 폐회하는 날까지 총 1,328개의 자발적 공약이 등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총 6건의 자발적 기여를 등록(해수부 4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건)하였다.

제2절 주요국의 해양분야 SDGs 이행

1. 미 국

가. 개 관

미국은 “국무부(The Department of State)의 해양 및 국제환경과학국(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전담”하고, “경제개발, 사회발전, 환경보존에서의 개발목표를 이루기 위한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를 주관”하고 있다.¹¹⁾

동 부처는 환경 조성, 자연환경, 제도 환경으로 크게 나누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환경 부문에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해양-해양-어업, 생태계서비스 및 자연자원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¹²⁾

나. 해양분야 관련 이행

미국은 2010년에 운송(Transport), 화학물질(Chemicals), 쓰레기 관리(Waste Management), 채광(Mining) 그리고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에 대하여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미 환경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해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11)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p.4

12)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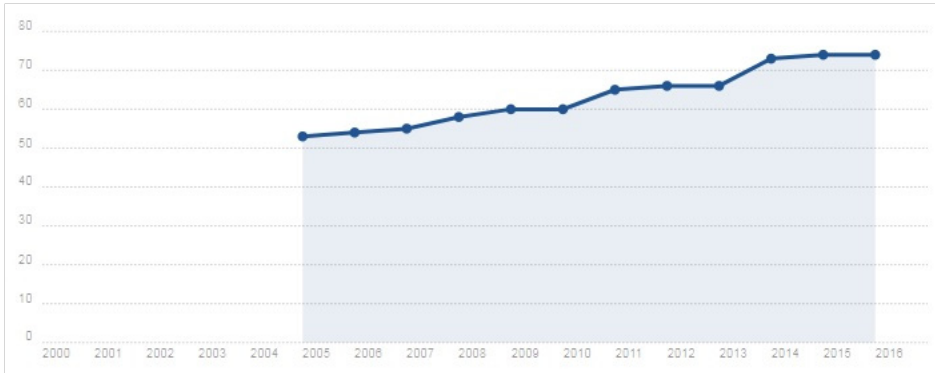
않다. 14번 목표를 포함한 해양과 관련된 세부적인 이행 내용은 향후 2019년에 제출될 국가 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 미국의 UN SDG 14번 목표 지표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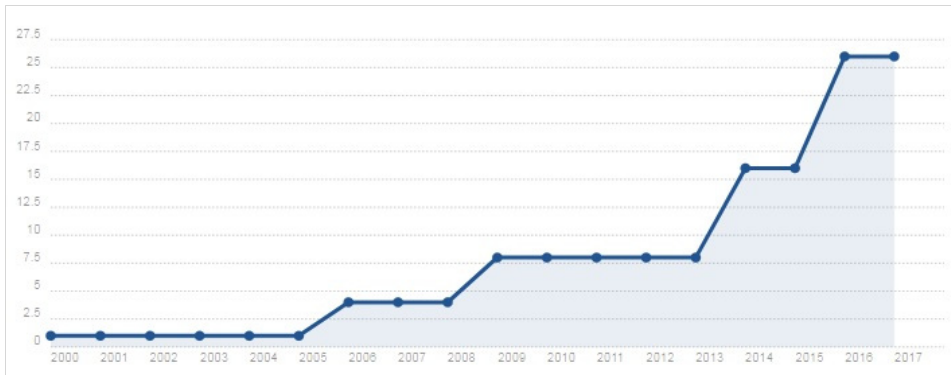
| 이행 현황 | UN SDG 14번 목표 |
|-----------|--|
| 개선 중 | 14.1.1 연안 부영양화 및 유동 플라스틱 쓰레기의 잔해밀도 지수 |
| 개선 중 | 14.2.1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비율 |
| 개선 중 | 14.3.1 합인된 대표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성도(pH) |
| 온라인 보고 완료 |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이내의 어족자원 비율 |
| 온라인 보고 완료 | 14.5.1 해양지역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 |
| 데이터 수집 중 |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IUU)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international instruments)의 이행 정도에 대한 국가별 진전 |
| 개선 중 | 14.7.1 군소도서개발국(SIDS),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의 GDP 대비 지속가능한 어업의 비율 |
| 데이터 수집 중 | 14.a.1 해양기술 부문 연구에 할당된 전체 연구예산의 비율 |
| 데이터 수집 중 | 14.b.1 국가별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의 접근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 법적·규제적·정책적·제도적 기반의 실행단계의 국가별 진전 |
| 개선 중 | 14.c.1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을 이행하는 법적·정책적·제도적 기반, 그리고 해양관련 수단의 비준, 수용하고 이행하는데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

자료 : <https://sdg.data.gov/life-below-water/> (검색일자 : 2018.08.20.)

다만, 미국은 2010년 이후 고위급정치포럼(HLPF) 등 회의에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14번 목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7일 유엔 회의에서는 IUU 어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림 3-1> 미국의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업자원 비율

자료 : <https://sdg.data.gov/14-4-1/> (검색일자 : 2018.08.22.)

<그림 3-2> 미국의 해양구역 면적 대비 보호구역 면적의 비율

자료 : <https://sdg.data.gov/14-5-1/> (검색일자 : 2018.08.22.)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함으로써 각 목표별로 규정된 지표의 국내 이행현황을 ① 데이터 수집 중, ② 개선 중, ③ 온라인 보고완료로 구분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있다. 특히 14번 목표의 경우 2018년 8월 현재 ① 14.6.1, 14.a.1, 14.b.1은 데이터수집 중인 것으로, ② 14.1.1, 14.2.1, 14.3.1, 14.7.1, 14.c.1은 개선된 것으로, ③ 14.4.1, 14.5.1은 온라인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보고가 완료된 14.4.1(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자원 비율)과 14.5.1(해양구역면적 대비 보호구역면적)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2005년(53)부터 2016년(74)까지 완만하게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2000년(1)부터 2017년(26)까지 계단형 형태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본

가. 개 관

일본은 과거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부처간 논의를 통하여 환경부 및 환경중앙위원회의 주도로 1994년 제1차 환경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며,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¹³⁾ 이후 유엔에서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발표되면서 그 이행을 위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2016년에 일본 정부는 총리를 주관으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SDGs 활성화 본부’(SDGs Promotion Headquarters)라는 새로운 내각기관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NGO, 학계 등의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회의에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일본의 국가전략을 담은 ‘SDGs 이행 가이드 원칙’(SDGs Implementation Guiding Principles)을 채택하였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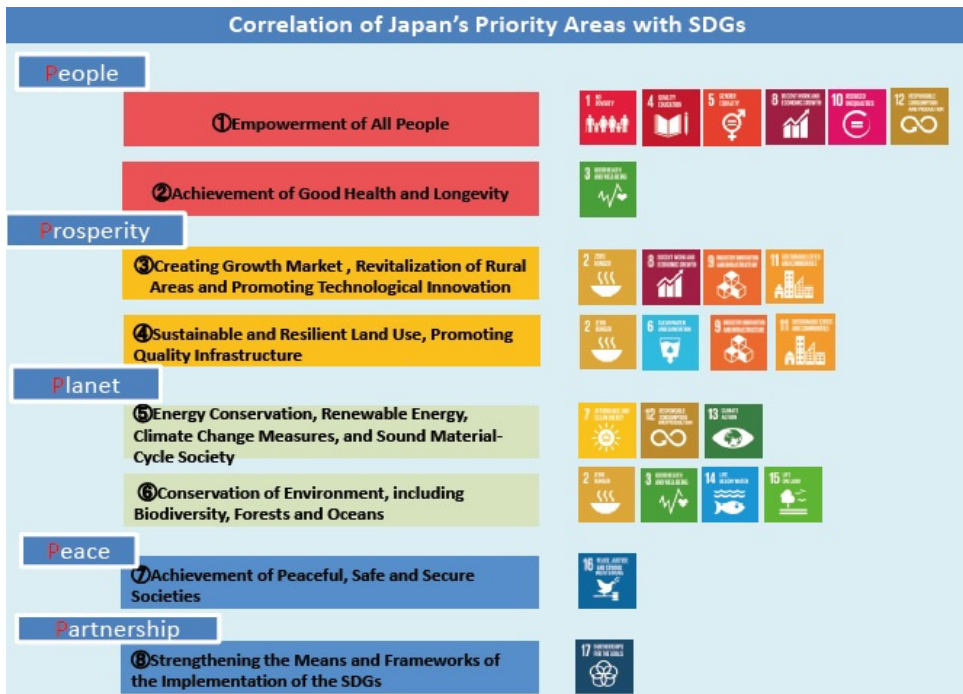
SDGs 이행 가이드 원칙에서는 일본의 국가 상황에 맞게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재구성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8가지 우선순위 영역을 확정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지표를 함께 설정하였다. 즉 8가지 영역은 ① 모든 사람들의 권리 (관련 SDGs : 1, 4, 5, 8, 10, 12), ② 건강 및 장수의 성취 (관련 SDG : 3), ③ 성장 시장 조성, 농촌 활성화 및 과학 기술 및 혁신 촉진 (관련 SDGs : 2, 8, 9, 11), ④ 지속가능 및 탄력적 토지 이용과 품질 기반 조성 (관련 SDGs : 2, 6, 9, 11), ⑤ 에너지 보존, 재생 에너지, 기후 변화 대책 및 자원순환

13)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요약문 참조.

14) 윤유리,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II」, 개발과 이슈 제39호, 2017.12, p.7 참조.

사회 (관련 SDGs : 7, 12, 13), ⑥ 생물 다양성, 산림과 해양을 포함한 환경 보전 (관련 SDGs : 2, 3, 14, 15), ⑦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실현 (관련 SDG : 16), ⑧ SDGs 이행을 위한 수단과 기본 틀 강화 (관련 SDG : 17)로 구성되어 있다.¹⁵⁾

<그림 3-3> 유엔 SDGs와 일본의 우선순위 영역과의 관계



자료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445JapanVNR2017.pdf>. (검색일자 : 2018.08.22.)

나. 해양분야 관련 이행

일본은 2017년에는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유엔에 제출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현황을 보고하였다.

15)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mberstates/japan>. (검색일자 : 2018.08.20.)

특히 해양과 연관성이 높은 14번 목표의 지표 이행에 대하여 ① 깨끗한 해수, ② 생물 다양성, ③ 어업과 관련된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와 함께 ④ 해양구역면적 대비 보호구역면적 비율, ⑤ 어획자원의 남획 비율로 적시하였다. 즉, ② 생물다양성 지수는 90.4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① 깨끗한 해수 지수와 ④ 해양구역면적 대비 보호구역면적 비율은 63.7과 34.8%로 보통, ③ 어업 지수와 ⑤ 어획자원의 남획 비율은 29와 51.1%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일본의 유엔 SDG 14번 목표 이행 현황

| SDG14 | | |
|------------------------|------|---|
| 해양건강지수 - 청정 해역 (0-100) | 63.7 | ● |
| 해양건강지수 - 생물다양성 (0-100) | 90.4 | ● |
| 해양건강지수 - 조업 (0-100) | 29 | ● |
| 완전히 보호되는 해양 지역 (%) | 34.8 | ● |
| 남획 또는 훼손된 어족자원 (%) | 51.1 | ● |

자료: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445JapanVNR2017.pdf>. (검색일자 : 2018.08.22.)

유엔 SDG 14번 목표와 관련된 우선순위 ⑥ 영역(생물 다양성, 산림과 해양을 포함한 환경 보전)에서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원관리가이드라인(Resource Management Guidelines)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은 자원관리계획(Resource Management Plans)을 수립하여 자발적으로 정부의 관리정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산자원 관리 매커니즘(fish resource management mechanism)은 해양자원관리(marine resource management)를 활성화하였고, 2016년 3월말 현재 1,868개의 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고자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s)의 IUU 어업 금지 조치 강화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16)

16)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445JapanVNR2017.pdf>. (검색일자 : 2018.08.22.)

3. 군소도서개발국 및 아프리카 개도국

가. 개요

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과 아프리카 개도국(African Countries) 등 개도국들도 유엔 SDG 14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도국의 14번 목표의 이행은 지역차원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이행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해수면상승, 재해위험 등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관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나. 군소도서개발국(SIDS)의 해양관련 이행

군소도서개발국(SIDS)은 카리브해,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남중국해 등에 위치하는 38개 유엔 회원국과 20개 비회원국 또는 지역위원회 회원국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동시에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그룹이다.

SIDS는 2014년 Samoa에서 회원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로(pathway)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차 SIDS에 관한 국제회의(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DS)’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약 300개의 군소도서개발국들이 SIDS의 파트너십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이 회의 결과에 힘입어 제70차 유엔 총회는 결의문 A/70/202를 통해 ‘SIDS Partnership Framework’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SIDS 파트너십을 통해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모니터링 및 보장하고, 이들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진정하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장려하고자 하였다.¹⁷⁾

한편, 상기 ‘제3차 SIDS 국제회의’에서 발족된 ‘SAMOA(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Pathway’¹⁸⁾를 통해 국가들은 SIDS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있어 기

17) <http://www.sids2014.org/>. (검색일자: 2018.08.26.)

18)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ids2014/samoapathway>;

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해수면상승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이슈들 가운데 특히 경제적 발전, 식량안보, 재해위험감소, 해양관리 등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또한, SAMOA Pathway는 SIDS를 위한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SIDS의 노력에 대한 행동과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⁹⁾

그러나 많은 SIDS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유의 취약성 - 예를 들어, 작은 규모, 원거리,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변화 민감성, 협소한 자원기반 등 - 으로 인해 “특수한 경우(special cases)”의 상황에 처하는 것이 현실이다.²⁰⁾ 이처럼 SIDS는 해양의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가 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한 복원력과 생존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SDG 14번 목표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 아프리카 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과 아프리카 개도국(African Countries) 등 개도국들도 유엔 SDG 14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도국의 14번 목표의 이행은 지역차원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이행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해수면상승, 재해위험 등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관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라. 군소도서개발국(SIDS)의 해양관련 이행

군소도서개발국(SIDS)은 카리브해,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 남중국해 등에 위치하는 38개 유엔 회원국과 20개 비회원국 또는 지역위원회 회원국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동시에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그룹이다.

<http://www.2030caribbean.org/content/unct/caribbean/en/home/sustainable-development-goals/samoa-pathway.html>
참고. (검색일자 : 2018.08.26.)

19)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topics/sids>. (검색일자 : 2018.08.26.)

20) UN-OHRLL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Numbers: Biodiversity & Oceans』, p. 5.

SIDS는 2014년 Samoa에서 회원국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로(pathway)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차 SIDS에 관한 국제회의(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DS)’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약 300개의 군소도서개발국들이 SIDS의 파트너십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이 회의 결과에 힘입어 제70차 유엔 총회는 결의문 A/70/202를 통해 ‘SIDS Partnership Framework’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SIDS 파트너십을 통해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모니터링 및 보장하고, 이들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진정하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장려하고자 하였다.²¹⁾

한편, 상기 ‘제3차 SIDS 국제회의’에서 발족된 ‘SAMOA(SIDS Accelerated Modalities of Action) Pathway’²²⁾를 통해 국가들은 SIDS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있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해수면상승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이슈들 가운데 특히 경제적 발전, 식량안보, 재해위험감소, 해양관리 등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또한, SAMOA Pathway는 SIDS를 위한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SIDS의 노력에 대한 행동과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²³⁾

그러나 많은 SIDS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유의 취약성 - 예를 들어, 작은 규모, 원거리,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변화 민감성, 협소한 자원기반 등 - 으로 인해 “특수한 경우(special cases)”의 상황에 처하는 것이 현실이다.²⁴⁾ 이처럼 SIDS는 해양의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가 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한 복원력과 생존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SDG 14번 목표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 <http://www.sids2014.org/>. (검색일자: 2018.08.26.)

22)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ids2014/samoapathway>; <http://www.2030caribbean.org/content/unct/caribbean/en/home/sustainable-development-goals/samoa-pathway.html> 참고. (검색일자 : 2018.0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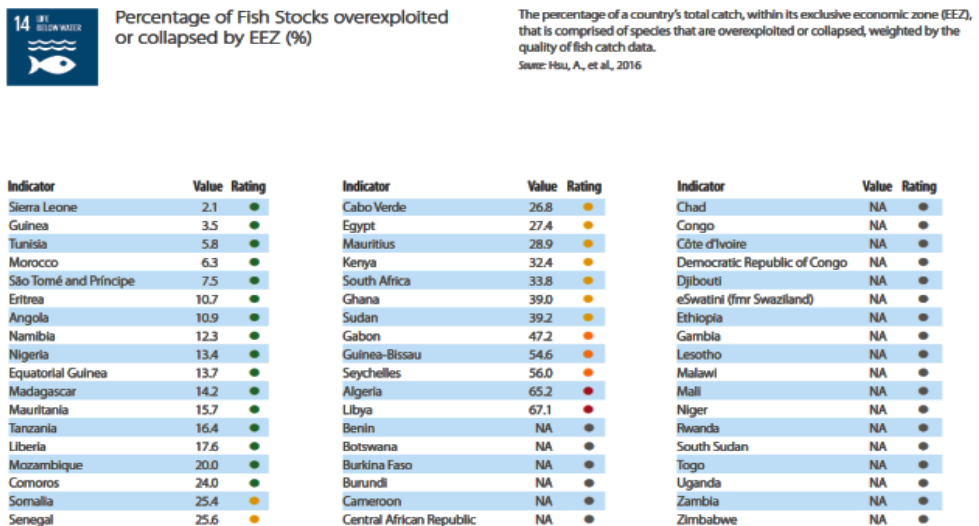
23)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topics/sids>. (검색일자 : 2018.08.26.)

24) UN-OHRLL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Numbers: Biodiversity & Oceans』, p. 5.

마. 아프리카 개도국

아프리카의 해양생태계는 해양, 하구, 산호초, 맹그로브숲, 습지, 해안사구 등에 걸쳐 존재한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서비스에 관한 측면에서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극심한 기상 및 해수면상승으로부터의 연안 안정화, 수질 및 수자원량의 규제, 생물다양성, 수생식물 서식지 확대 등에 관한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연안공동체의 생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해양자원을 대체할 그들의 생계자원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자원은 이들의 생계 및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1천만 명 가량의 아프리카 인구가 수산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 아프리카 연안국의 경우 국민이 일상적으로 하루에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량의 70% 가량이 수산물에서 비롯된다.²⁵⁾

<그림 3-4> 아프리카 국가의 EEZ 수산자원 남획 비율 현황



자료: <https://sdgcafrica.org/wp-content/uploads/2018/07/AFRICA-SDG-2018-Final-Summary-Report.pdf>.
(검색일자 : 2018.08.26.)

25) https://www.uneca.org/sites/default/files/uploaded-documents/SDG/africa_regional_report_on_the_sustainable_development_goals_summary_english_rev.pdf. (검색일자 : 2018.08.26.)

아프리카 지역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범위는 이들의 수산자원이 안전한 생물학적 제한범위(safe biological limits)의 경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러한 범위는 국가,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종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약 57.4%에 해당하는 어족 자원이 2009년에 이르러 제한어획량에 달할 것(fully exploited)으로 예측된 바 있다. 그러나 남획 또는 안전한 생물학적 제한범위를 초과한 해양수산자원의 비율은 더욱 증가하였으며, 완전히 어획되지 않은 자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즉, 실제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안전한 생물학적 제한범위를 벗어나 남획된 해양수산자원의 비율은 제한어획량에 일치한 해양수산자원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 아프리카에서 남획된 수산자원의 비율이 18.6%였다면, 2009년에 이르러서는 29.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와 같이 아프리카 개도국에서는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주민의 생계 및 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는 2015년 12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목표 9번(Combat desertification and land degradation, mitigate drought and promote sustainable management of land and oceans)에서 지속가능한 해양의 관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목표 8번(Enhance environmental quality, resilience and protection; and promote sustainable exploitation, use and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에서는 환경과 자연자원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면서, 그 세부목표 8a.2번(Achieve at least 60 per cent improvement in ocean and river quality by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해양환경의 질을 최소 60%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26) https://www.uneca.org/sites/default/files/uploaded-documents/SDG/africa_regional_report_on_the_sustainable_development_goals_summary_english_rev.pdf. (검색일자 : 2018.08.26.)

<표 3-3> post-2015 아프리카 지역 12개 지속가능발전목표

| | |
|-------|---|
| 목표 1 |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
| 목표 2 |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고 식량안보 및 적절한 영양을 달성 |
| 목표 3 |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부담가능한(affordable), 접근가능한,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 및 그 질을 확보 |
| 목표 4 | 전 단위에 걸쳐 부담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달성 |
| 목표 5 | 성평등의 달성, 여성, 청년, 취약한 조건의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 강화 |
| 목표 6 | 최저수입 및 사회안보, 청년을 포함 모두의 적절한 고용 등을 포함한 사회적 포용 및 보호 보장 |
| 목표 7 | 경제의 구조적 변형 및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획득; 인프라구조 개발, 포괄적·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부담가능한 에너지 접근, 회복력 있는 도시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설계 |
| 목표 8 | 환경적 질, 회복력 및 보호 강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이용 및 관리 촉진 |
| 목표 9 |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대응, 가뭄 저감 및 토지·해양의 지속가능한 관리 촉진 |
| 목표 10 | 문화, 연구, 과학, 혁신, 기술개발 촉진 |
| 목표 11 | 개발을 위한 글로벌 및 지역적 파트너십 확대 |
| 목표 12 |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굿 거버넌스 촉진 |

자료: https://www.uneca.org/sites/default/files/uploaded-documents/SDG/africa_regional_report_on_the_sustainable_development_goals_summary_english_rev.pdf. (검색일자: 2018.08.26.)

한편,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한발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은 ‘아프리카연합 2063 어젠다(African Union’s 2063 Agenda)’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아프리카 그룹의 자체적인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신속하고 견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아프리카 지속가능발전목표 센터(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enter for Africa, SDGC/A)’는 아프리카의 개발 비전을 공유하고, 이들의 동참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구적인 보전 및 SDGs 관련 활동에 있어 다른 책임있는 주체들과 함께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마련되었다. 동시에 아프리카의 SDGs 이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 국가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술기관 등에 중립적인 권고 및 전문가 견해를 제공하는 등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⁷⁾

4.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경우 국내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분야와 관련하여 관련 데이터를 확보·공개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미국 정부는 데이터 수집 단계를 데이터 수집 중-개선 중-온라인 보고완료로 구분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SDGs의 이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은 해양지역 면적 대비 보호구역 면적 비율이 높아지는 비율을 확인하고 국가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일반 국민은 국가가 추가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그 거버넌스의 결과물을 토대로 생물다양성, 산림 등과 함께 환경보전 측면에서 해양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점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어 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통하여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수산과 관련된 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양자원을 관리하고, 유엔의 SDGs를 이행하려고 있다는 것이다.

태평양 도서에 위치한 국가 등 군소도서개발국과 아프리카 개도국은 식량안보와 어업,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14번 목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27) <https://sdgcafrica.org/overview/>. (검색일자 : 2018.08.28.)

인프라와 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국제기구나 선진국과의 협력, 지역협의체를 통한 대응과 같이 공동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4장

국내 해양분야 SDGs

● 정책 및 법률

제1절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K-SDGs의 수립

제2절 해양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제3절 해양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법률

제4장

국내 해양분야 SDGs 정책 및 법률

제1절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K-SDGs의 수립

1. K-SDGs 이행전략 수립 논의 경과

’17년 8월에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에서 범부처 산하로 위상을 강화하였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SDGs) 수립 추진계획’을 ’18년 2월 마련하고 기재부, 환경부, 교육부 등 23개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18년 3월에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방향을 논의하였다.

K-SDGs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30년까지 국가변화를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을 체감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18년 6월에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목표와 지표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등 K-SDGs 이행전략을 ’18년 12월까지 수립하는 것을 기본 로드맵으로 하고 있다.²⁸⁾

28) 환경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작업반 착수설명회 자료집」, 2018.4, p.10.

K-SDGs 마련을 위해 국장급 관계부처 K-SDGs 협의체와 과장급 K-SDGs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참여 거버넌스인 ‘SDGs 목표별 민·관·학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탁회의 형태의 ‘국가SDGs 포럼’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K-SDGs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기능하고, 국내의 현황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4-1> 우리나라 K-SDGs 작성 로드맵



자료 : 환경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작업반 착수설명회 자료집」, 2018.4, p.11.

K-SDGs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을 중요시 하고 있는바, 이는 K-SDGs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하

고, K-SDGs의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 ‘남북간 평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²⁹⁾

K-SDGs의 작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192명, 23개 부처 공무원 238명으로 구성된 총 430명이 참여하는 K-SDGs 작업반³⁰⁾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작업반의 논의를 통해 5월 18일에 ‘K-SDGs 작업반 보고서 초안’을 확정하여 공개하였다. 작업반별 1차 보고서는 총 14회에 걸쳐 보완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으며, 2차 보고서는 5월 25일~6월 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친 보완회의를 거쳤다. 지난 5월말에 제1차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완료한 후 ‘K-SDGs 보고서(안)’에 대한 동남권, 호남권, 수도권 지역순회 토론회를 총 3차례 실시하였고, K-SDGs 작업반 회의와 K-SDGs 수립 이해관계자 그룹(K-MGoS, Korean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³¹⁾³²⁾ 회의 및 입장보고서 작성, 관계 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K-MGoS 참여 체계가 기존의 참여체계와 다른 점은 첫째, 개인이든 단체든 참여자 기준과 수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둘째,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과정과 각 그룹의 입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식적으로 기록·저장된다는 점이다. 셋째, 여성, 아동·청소년, NGOs, 농민, 노동자, 기업, 학계, 지방정부, 장애인, 노인 등 주요 주체그룹들을 세분화하여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포용성 기준을 제시하여 진행함으로써 상호이해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였다³³⁾.

29) 환경부, 보도자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으세요’, 2018.6.7, p.1.

30) ‘국가지속가능발전 수립 작업반’은 시민단체, 정부·공공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공동작업반을 의미한다. 환경부 전계 보도자료,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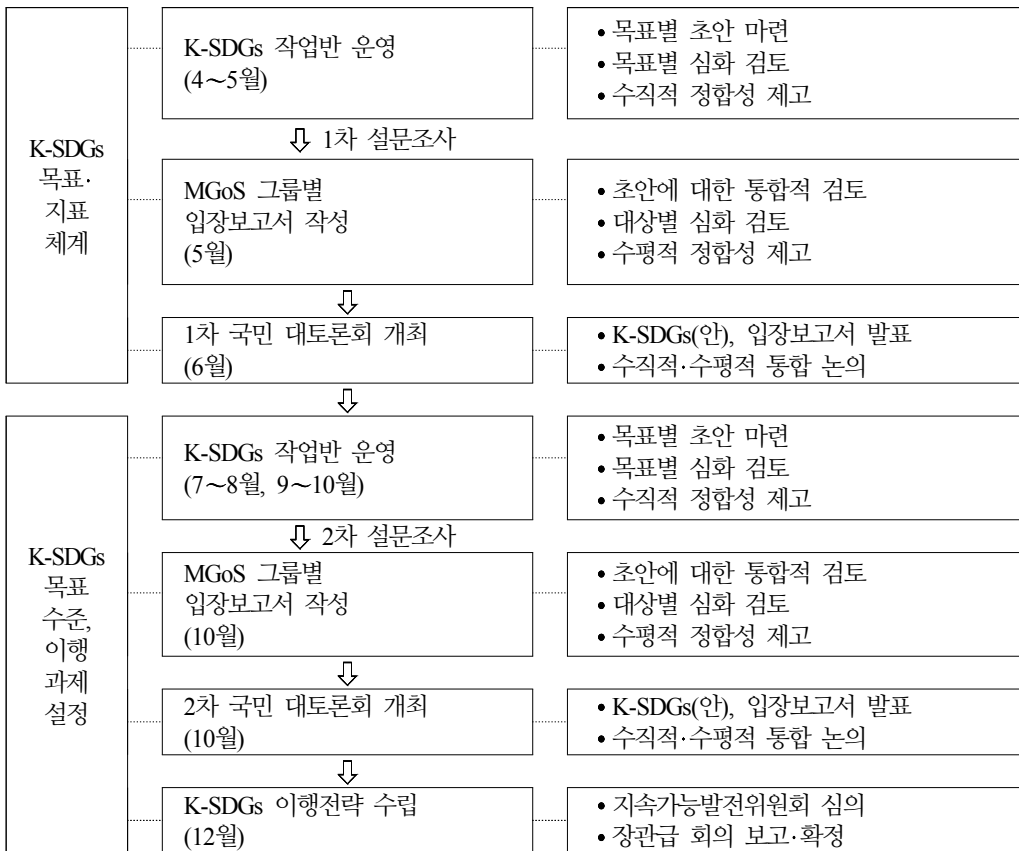
31) ‘국가지속가능발전 수립 이해관계자 그룹(K-MGoS)’은 SDGs의 특징인 목표간 연계성 검토와 수립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 주요 이해관계 그룹을 구성하였다. 환경부 전계 보도자료, p.7.

32) K-MGoS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 시민사회단체(NGOs), 농민, 노동자, 기업, 지역공동체, 학계 등 사회주체를 그룹별로 세분화하여 공개모집하고, 그룹별 입장문서는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을 통해 공개·저장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33) K-SDGs 작업반 목표 및 지표 초안에 대한 NGO그룹 입장문서, p.2. <http://ncsd.go.kr/app/board/mgosWsView.do>

K-SDGs 수립을 위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전문가 작업반은 23개 관계 부처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했으며, 최종적으로 192명이 위촉되어 빈곤종식, 양성평등 등 14개 작업반으로 나뉘어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그림 4-2> 우리나라 K-SDGs 수립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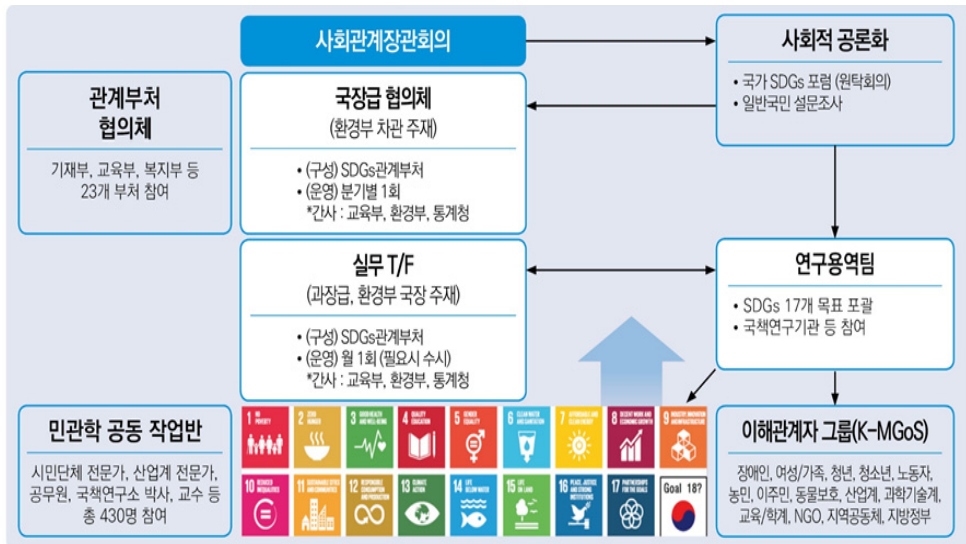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으세요, 2018.6.7., p.4.

한편, K-SDGs 초안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21일에 ‘K-SDGs 수립을 위한 제1차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제2차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K-MGoS, 국민대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의견, 관계부처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K-SDGs 이행전략’은 향후 12월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급 보고이후 확정될 예정이다.³⁴⁾

2. K-SDGs 이행전략의 원칙

K-SDGs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방향성과 구조를 준용하지만, 한국적 상황에 맞는 특색을 살려, 국민이 쉽게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림 4-3> 우리나라 K-SDGs 수립체계



자료 : 한국행정학회, K-SDGs 수립결과와 세부목표, 지표(안) 발표자료, 2018.6.21, p.3.

34) 환경부 보도자료, pp.3-4.

또한 유엔 SDGs의 17개 목표(Goals)를 포괄하되, 169개 세부목표(Targets)는 목표내 대표성, 시급성, 국내 이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지표(indicators)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K-SDGs가 향후 분야별 ‘국가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적 정책적 고려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즉, 행정의 국민체감 결과지표가 되도록 하고, 공식적인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적, 국가적, 지방차원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³⁵⁾

3. K-SDGs의 비전, 세부목표와 지표

K-SDGs는 ‘지구촌 생명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유엔의 글로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K-SDGs의 수립과정에서 국내상황과 여건에 적합하도록 유엔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수정하였다. 즉, 유엔 SDGs가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K-SDGs는 26개 세부목표를 신설하고, 유엔 SDGs의 45개 세부목표를 제외하였다.

<표 4-1> 우리나라 K-SDGs의 세부지표 및 지표체계(안)

| SDGs | 합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목표 (신규) | 148 (26) | 6 (2) | 9 (3) | 9 (2) | 8 (-) | 9 (1) | 5 (3) | 6 (3) | 12 (-) | 6 (3) | 4 (-) | 9 (2) | 11 (2) | 5 (-) | 8 (3) | 12 (-) | 13 (-) | 16 (-) |
| 지표 (신규) | 269 (100) | 12 (4) | 13 (7) | 22 (7) | 16 (3) | 25 (6) | 10 (6) | 8 (4) | 12 (-) | 8 (6) | 4 (-) | 17 (5) | 13 (2) | 10 (2) | 14 (8) | 25 (-) | 39 (39) | 21 (-) |

자료 : 한국행정학회, K-SDGs 수립경과와 세부목표, 지표(안) 발표자료, 2018.6.21, p.19를 기초로 일부 수정

35) 환경부, 앞의 설명회 자료, pp.14-15.

또한 100개의 지표를 신설하고, 59개의 제외를 삭제하여 우리나라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였다.

<그림 4-4> 우리나라 K-SDGs의 세부목표 설정시 주요 고려사항



자료 : 한국행정학회, K-SDGs 수립경과와 세부목표, 지표(안) 발표자료, 2018.6.21, p.17.

4. K-SDGs 상 해양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해양분야 세부목표는 8개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는 1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여 K-SDG에서는 14번 목표 달성을 위하여 8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①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달성률(%), ② 해상기인 쓰레기의 해양유실, ③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 ④ 갯벌복원면적(km²), ⑤ 감척어선 수(건), ⑥ 어가 소득(백만원), ⑦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어가소득(%), ⑧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등이다.

<표 4-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중 해양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안)

| 번호 | 세부목표8 | 지표14(신규8) | 소관부처 |
|------|--|--|------------|
| 14-1 | 육상과 해양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신규) 수질평가 지수값(WQI, Water Quality Index)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달성률(%) ○(신규) 해상기인 쓰레기의 해양유실 | 해수부 환경부 |
| 14-2 |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신규)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 ○(신규) 갯벌복원면적(km ²) | 해수부 |
| 14-3 |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해양산성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 ○연안 평균 pH 농도 적정범위(8.0-8.2) 유지 | 해수부 |
| 14-4 |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과도한 어업을 지양한다. | ○연근해 어획량 대비 TAC 어획량 ○TAC 대상 어종수 ○(신규) 감척어선 수(건) | 해수부 |
| 14-5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 ○해양보호구역지역 지정 개소수 | 해수부 |
| 14-6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한다. | ○(신규) 어가 소득(백만원) ○(신규) 어가 소득/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 해수부 |
| 14-7 |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한다. | ○(신규)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 | 해수부 |
| 14-8 |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를 지원한다.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수급율(%)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단가 | 해수부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K-SDG 이행계획(초안)』, 2018.11.

제2절 해양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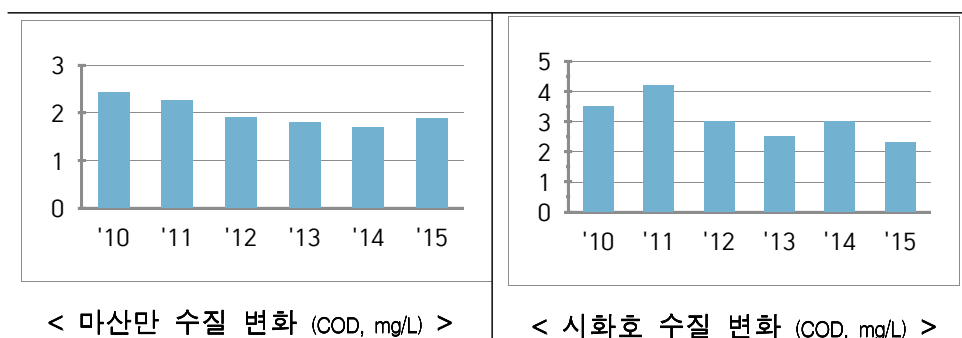
제2절에서는 유엔 SDG 14번 목표의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육상오염원에 대한 관리체계는 환경부의 하천오염원 관리정책과 연관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14번 목표를 기준으로 주요 관련 정책의 내용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해양오염 관리체계의 확립 (14.1번 목표)

가. 해양오염원의 저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대상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인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림 4-5>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이후 마산만 및 시화호의 수질 변화



자료: 해양수산부, “울산연안, 평양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추진”, 보도자료, 2016.4.18., p.3

동 제도는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수영만에 시행 중에 있고, 향후 울산연안과 광양만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마산만과 시화호는 연안총량관리제도 시행 이후 COD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여 대상해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⁶⁾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012년 7월에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관리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분뇨(오니)와 음폐수를, 2014년부터 폐수(오니)를 금지해오다가 2016년부터는 런던협약/의정서에서 해양배출을 금지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2005년 993만 m^3 에서 2015년 26만 m^3 으로 2005년 대비 97.4%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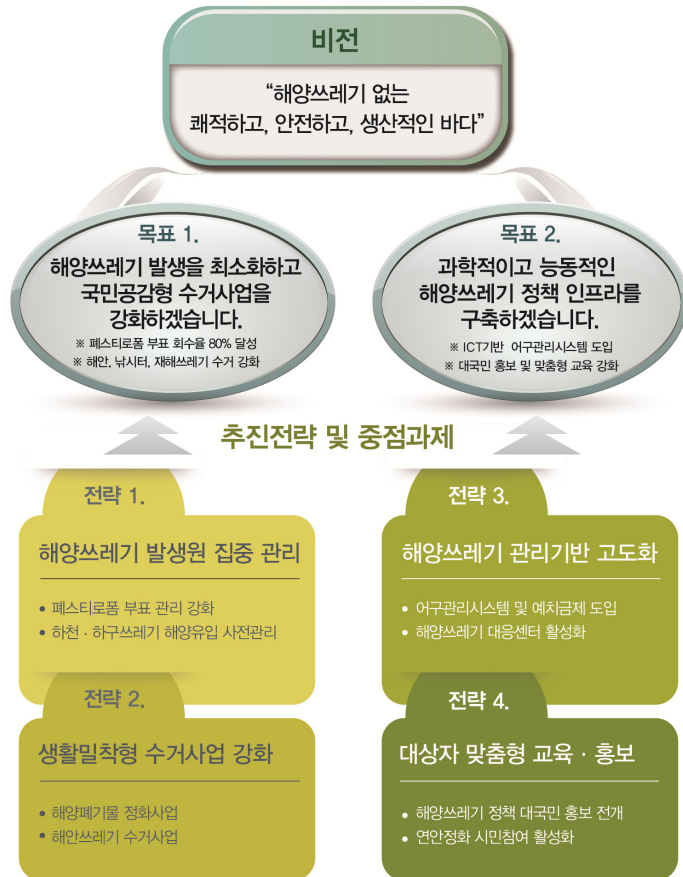
나. 해양쓰레기의 저감

우리나라는 육상으로부터 유입되거나 해상활동 등으로 인한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은 해양쓰레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바다만들기를 비전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국민공감형 수거사업 강화와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해양쓰레기 정책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해양쓰레기 발생원 집중관리, 둘째, 생활밀착형 수거사업 강화, 셋째, 해양쓰레기 관리기반의 고도화, 넷째, 대상자 맞춤형 교육·홍보 등 4대전략을 마련하였다.

36) 해양수산부, “울산연안, 광양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추진”, 보도자료, 2016.4.18, pp.1~2

37)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배출 급감...배출해역 환경 개선”, 보도자료, 2016.2.26, pp.1~3

<그림 4-6>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2014-2018)의 비전 및 목표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13.12, p.66.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해상기인 쓰레기의 해양 유실 투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① 양식장 페스티로폼 회수율의 확대, ② 폐어구 등의 재활용을 위한 감용기의 확대 보급, ③ 어민의 출입이 빈번한 항·포구 인근 해상에 선상집하장의 확대 설치(176→ 254개) 등을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고 해양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³⁸⁾

38)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2019~2023)’에 대하여 부처협의 등 수립절

더불어 2018년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위하여 52억원을 투입하였으며, 향후 폐어구 반납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기자재 개발·보급을 통해 폐어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5년에 수립한 「제2차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처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① 강 하구 부유쓰레기 유입차단막 설치, ② 하천·방조제 주변 쓰레기 적치장 설치, ③ 장마·홍수 전 수거 강화 등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을 통해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 해운항만 기인 오염원의 관리

① 녹색항만물류정책의 이행

해양수산부는 선박기인 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녹색항만, 녹색해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의 개별 부처가 파편적으로 추진해온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정책을 통합한 기본법 성격을 가진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저탄소 항만의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 등에 관한 정부의 국토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이 법이 규정하는 ‘저탄소 항만의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이후 「항만법」, 「대기환경보전법」 뿐 아니라 ‘그린포트 구축 종합계획’,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었으며,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선박 및 항만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관리 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20대 중점과제 중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체계적 이행(수송부문)’을 통해 제3차·공동물류 확산, 전환교통(Modal-Shift) 활성화, 에너지 자립형 항만 구축 등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³⁹⁾에 따른 항만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페스티로폼 부표 관리체계 개선, 친환경부표 보급 시 폐부표 의무반납, 감용기 보급사업의 지속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9)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요약본]」, 2014.6.

한편,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3~37%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철도·연안해운 위주의 녹색 물류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운 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선박 및 선박용 탄소포집기술 개발, 친환경 에너지 해상운송 기술 개발, 선박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이 제시되는 한편, 항만 부문에서는 저탄소 배후수송체계,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한 친환경 항만건설을 위한 그린포트 구축 종합계획, 녹색항만물류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적용 확대, 해양교통시설물에 녹색에너지 활용 및 해상교통 관제관련 국산화기술 개발 계획 등이 제시되었다.

2011년 「항만법」 제5조에 따른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오염방지협약 제VI부속서(MARPOL Annex VI)의 개정을 통한 국제항행선박 에너지 효율조치 시행의 의무화 및 연료 황함유량 기준 강화하고,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체결 이후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마련하고, 기존의 전략을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항만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면서 정책을 확대·강화하였다.

이 수정계획에서는 기존의 철도운송, 연안 해운, 신재생에너지, 항만 활동, 항만 방재 5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그린포트 정책 확대, 항만 방재, 운송’ 3개 분야로 재정비하면서 그린포트 정책 내에 항만 대기환경 모니터링·관리 시스템 구축, 육상전원공급시설 설치, 항만시설 및 하역장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병커링 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통합하면서 그린포트 정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표 4-3>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6~2020) 수정계획

| 구분 | 세부 이행방안 |
|-------------------|-----------------------------------|
| Green Port 정책 확대 |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 항만구역 대기질 관리 방안 마련 |
| | 육상전원공급시설 설치 |
| | LNG 연료 공급설비 확보 |
| | 하역장비의 전기 또는 LNG 방식 도입 |
| | 해상풍력단지 도입 검토 및 항만시설 지원 |
| | 항만내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확대 |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 구축 | 침수 피해예상지역 등 재해취약지구 지정 |
| | 선진 방재시설 도입 추진 |
| | 방파제 보강 및 선박 피항 외곽시설 확충 |
| | 다중이용 항만시설물 내진 보강 추진 |
| | 심해설계파 재산정 및 산정방법 고도화 |
|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 전환 | 항만 입안철도 확충(울산항, 포항항, 동해항, 부산항 신항) |
| | 철송 전환 기업 전환교통보조금 개선 및 보조금 인상 추진 |
| | 수송화물 연안운송 전환 유도 |
| | 자동차 부두 확보(광양항) |
| | 연안운송용 연료부두 조성(보령항, 군산항) |

자료: 해양수산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6-122호, 2016.

② 선박 대기오염원의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는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질소산화물만을 명시적인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⁴⁰⁾, 2014년에는 선박 배출량 산정대상에 여객, 어선, 레저선박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세분화된 산정방법론을 제시하였다.⁴¹⁾

40)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41) 해양수산부, 「선박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정책연구」, 2017, p190.

<표 4-4> 2013-2014년 선박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값 비교

| 구분 | CO | NOx | SOx | TSP(PM10) | PM2.5 | VOCs | NH3 |
|-----------------------|--------|---------|--------|-----------|-------|--------|------|
| 2013년 (기준방법) | 7,646 | 89,887 | 64,459 | 6,923 | 6,369 | 2,480 | 114 |
| 2014년 (개선방법) | 54,535 | 144,030 | 39,074 | 6,983 | 6,423 | 18,340 | 13 |
| 13년 대비 증감률 (기존→개선) | 613% | 60% | -39% | 1% | 1% | 640% | -89% |

자료: 해양수산부, 「선박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정책연구」, 2017, p190.

또한, 정부는 선박 미세먼지가 최근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장기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선박의 황함유량 제한을 위한 법적근거를 수립하여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

<표 4-5> 비도로 수송부문 단기·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대책

| 구분 | 추진 계획 | 추진 일정 |
|--------------------|----------------------------|-----------|
| 단기(~2018)) | 주요 항구도시 중심 종합대책 수립 | 2017 |
| | 항만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 2017~ |
| | 항만내 이동식 하역장비 친환경 연료 전환 | ~2022 |
| | 선박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상용화 | 2017~ |
| | LNG 병커링 인프라 기술개발 | 2018~ |
| 중장기 (2018~2022) | 선박 연료 황 함량 기준 3.5%→0.5% 강화 | 2020 시행 |
| | LNG 병커링 인프라 구축(통영, 부산, 울산) | 2019~2025 |
| | 육상전력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 | 신규건설부두 대상 |

자료: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 p23-24.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기반시설을 마련하여 LNG 추진 선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 건설 부두를 대상으로 육상전력공급시설을 구축 및 운영하여 정박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제로화 한다는 계획을 중장기 대책에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박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선박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회원국으로 하여금 ‘선박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EEDI)’를 도입하고, ‘데이터 수집시스템(DCS)’를 마련하도록 강제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제도화하고, 선박 배출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DB)을 구축하여 2018년부터 운영하고자 하고 있다.

③ 항만 대기오염원의 관리

항만 부문에서는 2018년 해양수산부의 「항만·선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을 통해 육상전원공급설비 공급 전국 확대, 배출제한구역(ECA) 국내 도입 방안,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산업 전망 및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대책은 2020년까지 항만과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의 6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는 동시에 선박의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형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해 항만 내 미세먼지 발생을 관리할 것을 제시하였다.⁴²⁾

또한,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선박 및 항만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항만 내 하역장비의 연료의 친환경화 추진을 단기적인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항만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기반 마련의 중요성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항만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1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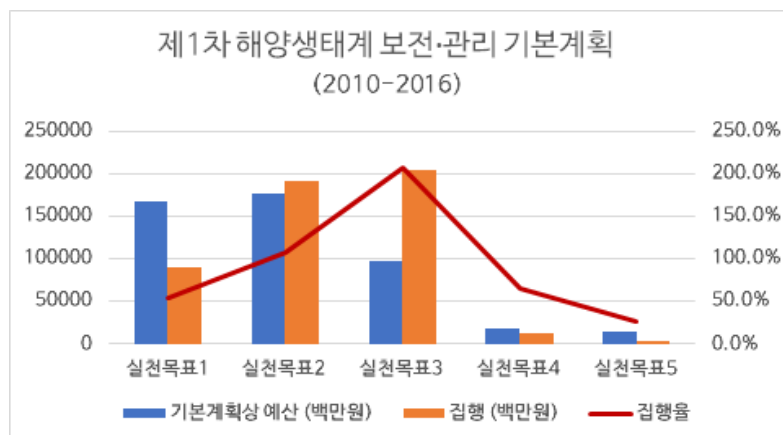
2.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처 관리 (14.2번 목표)

가.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

정부는 2009년에 처음으로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계획은 ① 체계적인 해양생물 서식지 관리, ②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강화, ③ 해양생태계 인식증진 및 지속가능한 이용, ④ 해양생태계 관리기반 구축, ⑤ 해양생태계 조사체계 구축 및 지식기반 강화라는 5개의 실천목표를 규정하였으나, 이행평가 결과 ②과 ③의 실천목표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고, 나머지 부분의 집행이 매우 미비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³⁾

<그림 4-7>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예산 집행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이행성과 연구』, 2018.3, p.215.

43)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이행성과 연구』, 2018.3, p.214

특히 해양생태계 복원의 경우 2010년부터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형태로 추진하였지만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되어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면적 1.08km², 물길회복 3.4km)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⁴⁴⁾ 이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 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⁴⁵⁾

나. 수산자원의 서식처 관리

해양산성화, 즉 바다사막화는 수산자원의 주요 서식지인 산호초 등의 훼손과 직결된다. 수산자원 회복과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3천ha('17, 15천ha → '18, 18천ha)와 완도·포항·고창·안산·서귀포 등 바다목장 5개소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는 14.2의 해양·해안생태계의 건강성과 생산성의 회복, 14.3의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⁴⁶⁾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 전국 연안의 갯녹음 발생 해역과 바다숲 조성 가능한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연안 생태계 및 수산자원 서식처 복원을 그 목적으로 인공어초 투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조성된 바다숲은 149개소, 누적 조성면적 1만8360ha(2018년 기준)에 달하며, 개소와 면적수 모두 제주가 34개소(6720ha)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28개소(2726ha), 강원 24개소(3725ha) 순이었다.⁴⁷⁾

44) 해양수산부, “5년간 갯벌 3km² 복원, 연간 195억 원 갯벌가치 되살린다”, 보도자료, 2018.7.9, p.1

45) 해양수산부, “5년간 갯벌 3km² 복원, 연간 195억 원 갯벌가치 되살린다”, 보도자료, 2018.7.9, pp.1~4

4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2018, p.28 참조.

47) 경북도민일보, “2400억 들여 조성한 바다숲 제구실 못해... 사후관리 강화·사업 발주방식 전환해야”, 2018.10.26.일자 기사 참조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176> (검색일자 : 2018.10.26.)

다. 질병에 강한 예방양식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수산질병 등을 유발하는 생사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생사료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2018년 4월에 ‘배합사료 사용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배합사료의 개발과 함께 생사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양식산업발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저어분 배합사료 개발 추진사업’에 대해 2018년에는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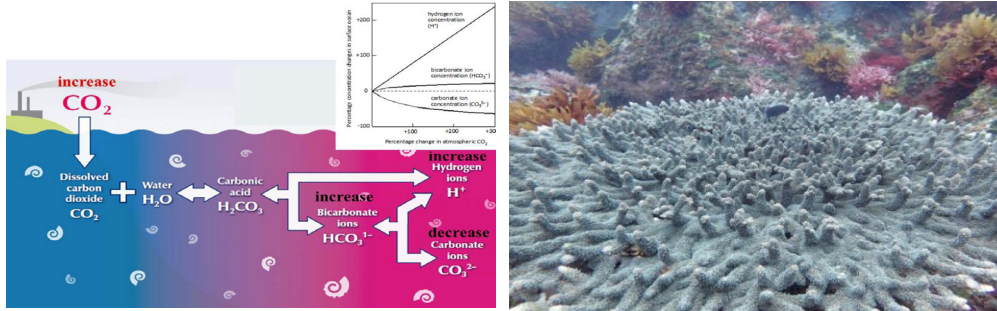
2018년 3월에 ‘수산종자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질병에 강한 우수종자의 개발·보급을 위해 수산 종자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우수종자 개발('18, 68억원), 무병 연구 보급센터 건립(새우, '18~'19, 34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14.2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조성을 위한 복원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3.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14.3번 목표)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란 통상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증가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의 약 1/4 이상이 해양으로 흡수되면서 해수의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되어 해수의 pH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⁴⁸⁾

48) https://kiost.ac.kr/cop/bbs/BBSMSTR_00000000011/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9FF77BF9655D66FE309FC0E00AB0468?ntId=16851&pageIndex=2&searchCnd=&searchWrd=. (검색일자 : 2018.08.23.)

<그림 4-8> 해양산성화로 인한 영향



자료 : UNEP CBD, An Updated Synthesis of the Impacts of Ocean Acidification on Marine Biodiversity, CBD Technical Series No.75, 2014. p.14.

자료 :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8/07/180728083507.htm>. (검색일자 : 2018.08.23.)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은 40% 증가하여 해양의 pH농도가 1750년대에 pH 8.2에서 2000년대 들어 pH 8.1로 악화되었으며, 만약에 현재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에는 2100년에는 해양산성화가 170% 수준까지 악화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⁴⁹⁾

이에 정부는 해양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해양에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국내 대학 연구진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남해와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큰수지맨드라미(산호류)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해양의 산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⁵⁰⁾ 2010년부터 「국가 CCS 종합 계획」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CCS) 기술 실증 및 상용화를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2011년부터 부처별 R&D를 추진해오고 있다.⁵¹⁾

49) UNEP CBD, An Updated Synthesis of the Impacts of Ocean Acidification on Marine Biodiversity, CBD Technical Series No.75, 2014. p.11.

50) 해양수산부, “산호 활용해 해양 산성화 진단한다”, 보도자료, 2015.10.13, p.1

51) 해양수산부, “해수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양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추진 박차”, 보도자료, 2015.11.16, p.6

4.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4.4번 목표)

가.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어장축소,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어업여건의 변화로 연근해의 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 톤에서 2010년 107만톤, 2016년에는 91만 톤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산자원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4개 어종,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1개 어종·13개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특성을 고려하여 「제2단계 어선감척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⁵²⁾ 또한 어선 감척대상 업종과 어구를 2018년 32개 업종, 9개 어구를 감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업인 스스로의 어획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활동 의지가 부족한 공동체는 퇴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퇴출 기준은 자율관리 공동체 참여율, 활동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는 과잉어획,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14.4번의 이행과 연계되는 정책이다. 더불어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개별양도성 할당제(ITQ),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한 일시적 조업중단형태의 휴어제의 도입가능성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⁵³⁾

나. 고수온 등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온관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17, 54개소→ '20, 80개소), 2018년부터 ‘이상수온 자

52) 「제2단계 어선감척 기본계획('19~'23)」은 2018년 12월에 수립될 예정이다.

5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2018, p.27 참조.

동 알림앱' 도입하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저층수의 취수를 위한 취수관 보급 사업에도 600억 원, 연 금리 1%로 지원하고, 2018년부터 우려해역에 대한 수온·염분 등의 재해예측 정보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2018년 4억 원 투입).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품종의 성장·번식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표준 사육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2018년 전복, 넙치 → 2019년 조피볼락, 강도다리 → 2020년 돔류, 송어, 쥐치 순으로 계획하고 있다.

다. IUU 어업의 근절

지난 2013년 11월 26일에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었다. EU는 우리나라가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고 어선 경로를 감시하는 조업감시센터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⁵⁴⁾ 우리나라는 예비 불법어업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13년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후에도 ① IUU 어업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조업감시센터를 설치·운영 하고, ② 국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기술·정책적 협력 확대 등을 위한 한-EU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2018년 10월 18일에 발표하였다.

또한 태국, 대만 등 IUU 근절 MOU 체결국과 유관 업·단체 등을 초청하여 IUU 근절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에라리온 등 연안국 IUU 어업 감시시스템 구축에 28억원을 지원하고, 선진 조업감시기법 전수 등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이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 중 14.4의 2020년까지 효과적인 IUU조업, 파괴적 어업관행 근절, 14.7의 군소도

54) 박진호, "EU, 대한민국은 예비 불법어업국",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 2013.11.27.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79225§ion=sc118§ion2=%EC%A0%95%EC%B9%98%EC%9D%BC%EB%B0%98. (검색일자 : 2018.10.01.)

서개발국과 최빈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어업 지원의 이행과 연계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과 WCPFC 제14차 과학위원회('18.8, 부산), FAO 자원이용-어업권 국제 컨퍼런스('18.9, 여수) 등을 개최하고, 해양수산 ODA사업 전문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개도국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⁵⁵⁾

5.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14.5번 목표)

해양수산부는 「습지보전법」 제8조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매년 1개 이상의 연안습지보호지역 또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그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2001년에 무안갯벌을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2017년 12월에 지정된 양양 조도 주변해역까지 총 28개소, 586.379km²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즉 연안습지보호지역은 총 14개소, 235.81km²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과 해양생물보호구역의 구분되어 전자의 경우 13개소, 259.332km², 후자의 경우 1개소, 91.237km²에 해당한다.⁵⁶⁾ 2016년 7월에 지정된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은 최초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보호대상 해양생물, 해양경관, 생물다양성 등 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2020년까지 관할해역의 1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2011-2020)의 이행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4.5번의 국내이행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5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2018, pp.41-42 참조.

56) 해양수산부,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지역별 맞춤형 관리체계 가동한다”, 보도자료, 2018.1.31., p.5.

<표 4-6> 연안습지보호지역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경과

| 구분 | 명칭 | 지정시기 |
|---------------------|------------|---------------|
| 연안습지 보호지역 | • 무안갯벌 | 2001.12.28. |
| | • 진도갯벌 | 2002.12.28. |
| | • 순천만갯벌 | 2003.12.31. |
| | • 용진장봉도갯벌 | 2003.12.31. |
| | • 부안출포만갯벌 | 2006.12.19. |
| | • 송도갯벌 | 2009.12.31. |
| | • 마산만 봉암갯벌 | (인천광역시) |
| | • 시흥갯벌 | 2011.12.16. |
| | • 대부도 갯벌 | 2012.02.17. |
| | • 서천갯벌 | 2017.03.22. |
| | • 고창갯벌 | 2018.08.31 |
| | • 신안 갯벌 | 2018.08.31. |
| | • 보성별교갯벌 | 2018.08.31. |
| | 해양보호구역 | • 신두리 사구해역생태계 |
| • 문섬등 주변해역생태계 | | 2002.11.05. |
| • 오륙도 및 주변해역생태계 | | 2003.12.31. |
| • 대이작도 주변해역생태계 | | 2003.12.31. |
| • 가거도 주변해역생태계 | | 2012.11.30. |
| • 소화도 주변해역생태계 | | 2012.11.30. |
| • 남형제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 | 2013.11.28. |
| • 나무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 | 2013.11.28. |
| • 청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 | 2013.11.28. |
| •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 | 2014.12.25. |
| • 추자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 | 2015.12.29. |
| •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 | 2016.07.25. |
| •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 | 2016.12.29. |
| • 양양 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 | 2017.12.08. |

자료 :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 http://www.ecosea.go.kr/mpa_domcondi/mpa/coni/mpa02.do. (검색일자 : 2018.09.10.)

<그림 4-9>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정현황



자료 :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 http://www.ecosea.go.kr/mpa_domcondi/mpa/condi/mpa02.do. (검색 일자 : 2018.09.10.)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별 해양보호구역별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정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Paper park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며,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학계,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림 4-10>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체계



자료 :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 <http://www.ecosea.go.kr/management/mpa/management/mpa04.do>. (검색일자 : 2018.09.10.)

6.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 (14.6번 목표)

14.6번 목표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① 4차 산업과 연계하여 양식산업의 첨단화·규모화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② 거점형 청정위판장 조성, 수산물 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 산물류센터 건립 확대를 통하여 수산물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어촌 뉴딜 300’을 추진할 계획인데,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019년에는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 등 7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⁵⁷⁾

5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어촌뉴딜300사업, 우리 어촌도 신청할 수 있을까?”, 2018.9.11, p.1.

7.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 이전의 확대 (14.7번 목표)

14.7번의 목표와 관련하여, 2016년 기준으로 정부연구개발 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3.0%에 불과하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의 세부목표인 해양오염원의 관리체계 확립,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처 관리, 해양산성화 영향의 최소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IUU 근절,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 확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등은 공통적으로 해양과학 연구역량의 제고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해양산성화 영향 최소화,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 이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수프로젝트’를 통해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의 해양정책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매년 추진되고 있는 ‘여수 국제아카데미’도 그 일환에 해당한다.⁵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KOICA사업과 연계하여 해양조사·연구사업인 ‘필리핀 해양보호구역 관리 실행사업’, 인도네시아 연안범람 문제 해결을 지원한 ‘인도네시아 연안통합관리 프로젝트’, ‘사모아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정책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⁵⁹⁾

8. 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 지원 (14.B번 목표)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세어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즉,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과잉 어획을 조장하는 직불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

5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4_0000399712&cID=10401&pID=10400. (검색일자: 2018.10.25.)

59) <https://blog.naver.com/koreamof/220932098774>. (검색일자: 2018.10.25.)

라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 수산직불제’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의 지급 단가의 산식을 점진적으로 변경할 계획인데, 이는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간 연간 평균어업 소득차의 50%를 지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조건불리지역과 일반지역간 어업소득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⁶⁰⁾

제3절 해양분야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법률

유엔 SDG 14번 목표의 이행을 위한 주요법률은 크게 ①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②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③ 해양과학기술의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14번 목표의 세부목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유엔 SDG 14번 목표 이행과 관련된 주요법률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표 4-7> 유엔 SDG 14번 목표의 이행과 관련된 주요법률 현황

|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
|---|---|
| 세부목표(Targets) | 주요 법률 |
| 14.1 ○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 등을 포함하여, 특히 육상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의 예방과 대폭적인 경감 |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
| 14.2 ○ 2020년까지 회복력 강화를 통해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과 연안 | ○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0) 어업총조사 기준으로 조건불리와 일반지역의 소득격차는 ('10년) 98만원 → ('15년) 293-424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K-SDGs 이행계획(초안)-14번 목표」, 2018.11.

|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
|---|---|
| 세부목표(Targets) | 주요 법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보호 ○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복원 조치의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보전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차원에서의 과학협력 증진 등을 통한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 지속가능 어획량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최단시간 내 수산자원의 복원을 위한 효과적인 조업 규제 및 남획,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 파괴적 어업관행의 근절과 이를 위한 과학적인 관리계획의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법 ○ 수산자원관리법 ○ 원양산업발전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최소 10%의 연안과 해양에 대한 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습지보전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과잉생산능력과 남획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 불법조업을 야기하는 보조금의 근절 ○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하는 가운데, 과잉생산능력, 남획, 불법어업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어업, 농업, 관광 등을 통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 등을 통해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함으로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 |
|---|---|--|
| 세부목표(Targets) | | 주요 법률 |
| | 군소도서개발국(SIDs)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혜택 증대 | |
| 14.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의 건강성을 높이고, 해양생물다양성의 개발도상국 특히, SIDs와 최빈국 발전기여도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지식 배양, 연구능력 개발 및 「정부간 해양학위원회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해양기술의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 14.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해양 자원 및 시장 접근 확보·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 14.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해양법협약」에 투영되어 있는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체계를 포함한 국제법의 전면적인 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원양산업발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자료 : 유엔 SDG 14번 목표를 기준으로 저자 작성.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가. 주요 법률 현황

국내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관련된 주요 법률(법률안을 포함한다)로는 ①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해양환경관리법」, ④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이 있다.

①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동 법률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제10조), 해양환경기준 설정(제13조) 등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함께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제21조),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제25조) 등 해양환경정책의 기반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법률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제정 목적으로 한다(제1조).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 수립 및 조사(제2장), 해양생물의 보호(제3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제4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제5장), 해양자산 관리(제6장) 등 국가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제도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이 법률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제2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제3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제4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제6장), 해양환경관리업(제7장) 등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대응하는 관리수단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을 관리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④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동 법률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제7조), 해안폐기물·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의 수거(제12조~제14조), 해양오염 퇴적물의 정화(제16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제20조) 등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 중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추가·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SDG 14번 관련 규정

앞서 본 국내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법률들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4.1번(해양오염 감소), 14.2번(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 14.3번(해양산성화 감소), 14.5번(연안 및 해양지역 보전)의 이행과 연관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① 14.1번 목표 : 해양오염의 저감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에의 배출·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은 환경관리해역⁶¹⁾ 지정·관리를 통하여 특별관리해역⁶²⁾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규제하고(제15조 제3항 제2호), 해역관리

61) 환경관리해역은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으로 구분됨(「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

62)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청이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제18조 제1항),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오염물질에 관한 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제25조~제27조) 오염물질 기록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34조).

특히 2017년 6월에 국회에 발의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에서는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11조 제1항),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로 구분하여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제14조).

② 14.2번 목표 :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서식처의 관리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제20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제25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제38조) 등을 통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복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6조 제3항).

③ 14.3번 목표 :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산성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정보와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양산성화를 기후변화의 한 요소로 파악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에서는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이기 위하여 철분 등 해양오염 저감물질을 해양에 살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최근에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해양시비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제19조 제1항). 즉 동 법률안은 국가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물질을 바다에 투입하여 해양산성화를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④ 14.5번 목표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14호). 즉,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연생태의 원시성, 해양생물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그리고 동 법률은 시·도지사의 경우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보호·육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 지정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연안습지⁶³⁾에 대해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 등은 14.5번 목표인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정책의 제도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63)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습지보전법」 제2조제3호.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가. 주요 법률 현황

우리나라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 IUU 예방, 영세 어업인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관련한 주요 법률로는 ① 「수산업법」, ② 「수산자원관리법」, ③ 「원양산업발전법」, ④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⑤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① 수산업법

「수산업법」은 1953년 9월 9일에 최초로 제정된 이래 65년간 우리나라의 수산업 관련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제정 당시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총합적 이용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55차례 개정작업을 거치면서 ① 「수산업법」은 해면어업 보다는 ‘기르는 어업’이 강조되고, ② 외해양식 면허제 도입, ③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遊漁) 개념 도입, ④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자 등의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해 왔다.

수산업법 상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은 어업활동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즉, 법 제66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을 금지하고 있다. 즉,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이 금지된다.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67조제2항).

②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은 2009년 4월 22일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하며(법 제2조제2호),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4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한편, 법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6조에서는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법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더불어 법 제17조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가 금지된다.

③ 원양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은 2007년 8월 3일에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여기서 원양산업이란 ①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한한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원양어업과 ②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원양어업관련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포괄한다.

이 때 “해외수역”이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예비 불법어업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13년 7월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법 제33조제1항).

또한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법 제14조), 어선위치추적 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였다(법 제15조제1항).

④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2015년 6월에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기존에 생산위주의 수산정책을 탈피하여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세계 수산업 시장의 진출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제정 목적 중 하나였다. 수산업, 수산인, 어업인에 대한 정의(법 제2조) 뿐만 아니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이행(법 제7조),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제15조~제33조), 어촌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제34조~제41조), 통일대비 수산업·어촌정책과 국제협력의 추진(제42조~제45조), 수산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영(제46조~제50조), 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제51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⑤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2015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낙도, 벽지 및 접경 지역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금 제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및 신청절차, 지급, 보고, 환수 및 가산금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조~제13조), 수산직불금은 수산분야 자유무역(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나. SDG 14번 관련 규정

① 14.2번 목표 :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서식처의 관리

「수산업법」상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은 어업활동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즉, 법 제66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을 금지하고 있다. 즉,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이 금지된다.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67조제2항).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16조).

한편,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20조). 더불어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제21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 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제23조).

이는 14.2에 따라 해안·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호,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② 14.4번 목표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어획물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14.4번 목표의 이행과 관련이 있다. 우선, 법 제16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둘째, 법 제17조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4번 목표인 IUU 어업 예방과 근절은 「원양산업발전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2015년 7월 7일에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통해서 해외수역에서 IUU 어업에 가담한 원양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하였다. 즉,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해외수역에서의 IUU 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 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IUU 어업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법 제12조의2).

또한,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기존 제29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에 IUU 어업의 통제 강화를 위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즉, 해외수역에서 IUU 어업 금지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5배 이하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33조제1항).

③ 14.6번 목표 : 과잉생산, 남획, 불법조업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의 근절

한편, 14.6번 목표인 2020년까지 과잉생산능력과 남획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와 불법조업을 야기하는 보조금의 근절의 이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은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14.C의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확보와 제공 목표와도 관련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수산업 정책자금’과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산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SDG 14.6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잉생산능력과 남획을 조장하거나 불법조업을 야기하는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법률을 살펴보면,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후에는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4조).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수산직불금 수령자가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산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산직불금이 있으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법 제13조).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판매 또는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법 제14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는 14.6번 목표와 관련이 있는데, 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산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 관리 및 감독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고 있다(시행령 제32조).

④ 14.B번 목표 :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의 해양자원 및 시장 접근 확보·제공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도시와 어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②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수산업 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 ③ 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 ④ 어촌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수산인의 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법 제46조에 따라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수산발전기금은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①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② 양식어업의 육성, ③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용자, ④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 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⑥ 수산물의 보관·관리, ⑦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 환경개선, ⑧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⑨ 새로운 어장의 개발(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협정의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 ⑩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⑪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⑫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⑬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⑭ 어선원의 복지증

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⑮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3.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

가. 주요 법률 현황

해양과학기술 분야를 다른 국가와 협력하거나 개도국을 지원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법률로는 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제정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해양과학기술위원회(제7조), 해양수산기술 분류체계 작성(제12조),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17조), 해양수산과학기술의 협력(제21조) 등 국내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육성·발전하기 위한 제도 수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제정 목적으로 한다(제1조).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7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국제협력 주관기관(제9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제12조)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양자간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제4조), 실무위원회(제8조), 남북한 방문(제9조), 반출·반입의 승인(제13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제24조) 등이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나. SDG 14번 관련 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협력 및 개도국 지원과 관련된 법률들은 유엔 SDGs 가운데 14.7번(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경제적 혜택 증대)과 14.A번(해양건강성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위한 해양기술이전)의 이행과 연관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

① 14.7번 목표 : 해양과학 연구역량 제고와 해양과학기술이전의 확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추진하되(제7조 제1항),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개도국에 대하여 유·무상의 개발협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1항).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 중에서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개도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 즉, 중점협력대상국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개도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을 포함한 개도국들이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 국가 차원에서 수산, 양식, 관광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② 14.A번 목표 : 해양건강성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위한 해양과학기술이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의 정부, 해양수산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 동향 파악,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제21조 제1항).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과학지식 배양, 연구능력 개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제22조). 이와 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업무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제23조).

제5장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

제1절 해양분야 SDGs 이행정책의 한계

제2절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

제3절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5장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정책 개선방향

제1절 해양분야 SDGs 이행정책의 한계

1.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정책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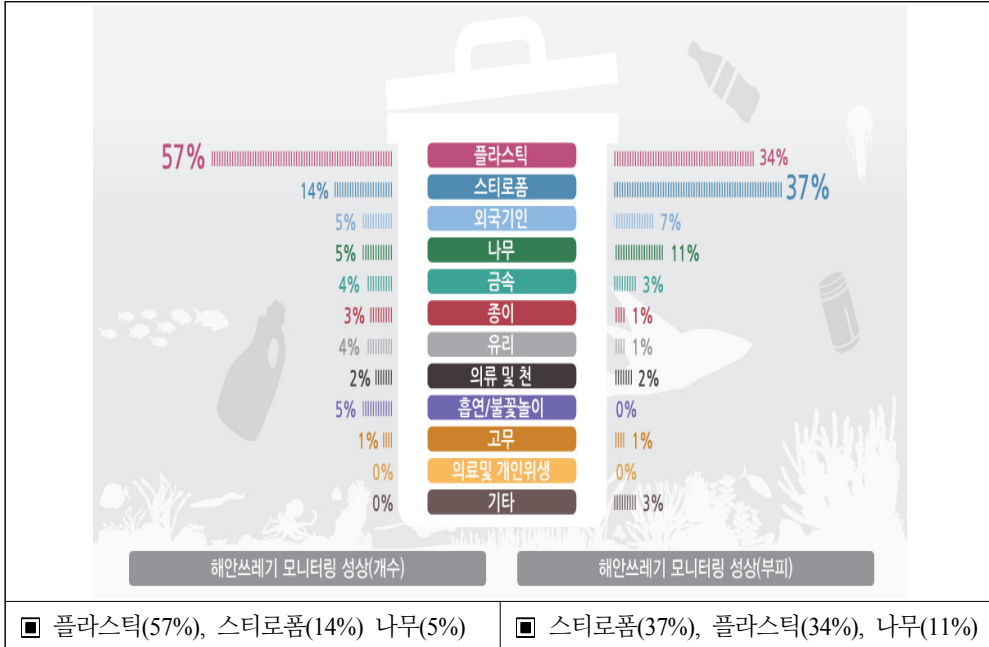
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부문의 유엔 SDGs 이행을 위하여 14번 목표의 세부목표에 따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책 추진 여건, 제도 도입 시기, 실질적인 효과 등 측면에서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14.1의 경우 떠다니는 플라스틱의 밀도를 지표로 삼고 있으나,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플라스틱의 비중이 높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6년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개수와 부피가 해안쓰레기의 전체에서 57%, 34%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부유 플라스틱의 밀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⁶⁴⁾

64) 해양수산부, '2016년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통계 분석', 2017.2. p.6.

<그림 5-1> 2016년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종류별 분석

(단위: 개, 리터)



자료 : 해양수산부, '2016년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통계 분석', 2017.2. p.6.

둘째, 14.2의 경우 현재로서는 생태계 기반 접근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EEZ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18년 4월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바탕으로 영해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공간적 범위로 하는 해양공간계획이 도입되었지만, 계획 수립에 따른 제도 정착의 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14.3의 경우 우리나라는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등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계획에서 해양산성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개별 단위의 연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정점의 선정, 시료 채취의 방법 등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14.5의 경우 최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개수가 매년 1~2개씩 증가함에 따라 그 면적이 늘어나 해양구역면적 대비 보호구역면적의 수치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최소 10%의 연안 및 해양지역을 보존하는 내용으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산정책의 한계

지속가능한 어업, 수산자원의 조성, IUU 어업 근절은 수산정책의 핵심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14번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국내외 여건은 여러 도전과제가 놓여 있다.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해양쓰레기, 수산질병 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있으며, 과잉어획이나 IUU 어업 근절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양산업발전법』상 해외수역에서의 IUU 어업에 대한 벌칙강화도 실질적인 이행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어업활동의 특성상 조업위치별로 어획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원양산업발전법』을 위반하였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조사를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14.2번 목표인 수산자원 서식지를 관리하기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것은 바다숲 조성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2400억 원이지만 어획량의 증가나 어족 자원 보호, 해양수중 생태계의 복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⁶⁵⁾ 수산자원의 서식처의 변화는 기후변화, 과잉어획, 생물다양성, 오염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서식처의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서식처 변화의 원인분석과 복원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오염원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5) 경북도민일보, “2400억 들여 조성한 바다숲 제구실 못해... 사후관리 강화·사업 발주방식 전환해야”, 2018.10.26.일자 기사 참조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176> (검색일자 : 2018.10.26.)

3. 해운항만정책의 한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등을 위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어 해운항만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그린포트 구축 종합계획, 항만기본계획 등은 각 해당 분야별로 해양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를 중심으로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해운항만 활동 및 항만지역에 대한 별도의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체계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선박이나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기초적인 근거 자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운 항만분야 대기오염물질의 적절한 감축 및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한다.

또한, 육상전원장치의 설치, 황함유량이 낮은 선박의 운용, 항만시설 및 하역장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박 액화천연가스(LNG) 병커링 지원 등 다양하게 수립된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미비하여 예산 및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미국 캘리포니아나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항만의 경우 선사나 터미널 운영사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자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정책 및 항만이용료 감면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효과적인 정책의 이행을 위한 관리자 및 담당자의 명확한 업무 분장도 한계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항만분야의 경우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당국의 명확한 업무 분담을 통해 유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항만 내 대기오염 관리의 경우

관련 직무에 관한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 결과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할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행에 한계를 가져온다.

해운항만분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를 위한 대상물질 규정이나 규제기준의 설정과 함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강제규정이 부족하다. 「항만법」을 통해 정부는 항만구역의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거나(제22조의2), 사업자로 하여금 저탄소 항만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권한을 부여(제22조의3)하는 등 광범위한 항만 유지·관리 노력을 장려하고 있지만, 해당규정은 강제성이 결여되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자연히 국내 항만의 환경관리정책은 항만 운영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오염방지(MARPOL)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법규정을 포함하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MARPOL 협약의 구체적인 기술적 규정에 해당하는 여섯 개의 부속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부분 시행규칙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규정들이 정교한 기술적인 성격을 지녔을 뿐 아니라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통해 부속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규칙에 많은 부분을 반영한 것은 적절한 입법방식일 수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위임규정을 모법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명확히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은 법률이행 과정에서 한계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4. 법제도적 한계

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국내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관한 법률들은 해양오염 감소,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 해양산성화 감소, 연안 및 해양지역 보전과 같이 유엔 SDGs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괄적으로는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관련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는 포괄적인 정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엔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한 제도적 한계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 형식이 많아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어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제도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 법제도적 한계점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법률 체계 또한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이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유엔 SDGs의 채택 이전에 국내 법률들은 각각의 입법목적에 맞는 제도가 도입·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의 내용을 유지하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과제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개별 조문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제도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면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 법체계적인 한계점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해양오염 예방의 경우 해양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쓰레기가 육상으로부터 해양에 유입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차단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리고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을 통합·조정하고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한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해양에서 발생하는 페스티로폼 회수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어촌형 순환 경제 모델의 개발 등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을 활성화해야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⁶⁶⁾⁶⁷⁾ 그리고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복원의 경우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계획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해양생태계를 관리·복원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적으로는 추진 중인 해양공간계획을 통하여 확보된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토대로 각 해역별 공간 특성에 맞는 해양생태계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⁶⁸⁾ 해양생태계의 핵심지역으로 볼 수 있는 갯벌에 대하여 훼손 지역을 대상으로 복원사업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것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관리와 복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⁶⁹⁾

한편, 우리나라의 해양산성화에 대한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시·규제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현황을 조사·평가”하고, “해양산성화 방지를 위한 저감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⁷⁰⁾ 즉, 산호의 백화현상과 같이 해양산성화와 관련있는 생태계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해양산성화 저감 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 개발, 해양 산성화 원인 기여도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등 연안해역 산성화 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⁷¹⁾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

66) 목진용외, 「해양환경 관리체계 개선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56.

67) 이윤정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KMI 동향분석 VOL.8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p.15.

68) 최희정·좌미라,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KMI 동향분석」 VOL.77, 2018.3, p.4.

6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5년간 갯벌 3km² 복원, 연간 195억 원 갯벌가치 되살린다”, 2018.7.9., p.4.

70) 목진용외, 「해양환경 관리체계 개선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57.

71) 목진용외, 「해양환경 관리체계 개선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58.

에서는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저감하거나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수단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산자원의 조성 및 영세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정책은 수산자원정책과 어업인 지원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정책은 유엔 SDGs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14.2번 목표(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서식처의 관리), 14.4번 목표(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4.6번 목표(과잉생산, 남획, 불법조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의 근절), 14.B번 목표(소규모 영세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에 대한 지원)는 다수의 정책과 관련되며, 수산자원 지속가능한 관리와 영세어민의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수산자원 관리정책은 해양오염원의 관리 및 해양생태계의 관리·복원 정책과 연계성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수산직불금, 수산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이 14.6번의 목표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 정보화(제30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제31조) 등의 규정 신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 해양과학기술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

해양과학기술의 협력과 개도국 지원과 관련된 법률들은 해양과학기술육성, 국제개발협력, 남북교류협력 등 전반적인 국제협력과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력 수단,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이 결여되어 있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해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발협력을 위한 실무상에서 다른 분야와 달리 해양분

야의 과학기술협력 및 개도국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원동력이 상실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제2절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14.1번 목표인 해양오염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쓰레기가 육상으로부터 해양에 유입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차단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리고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유사한 사업을 통합·조정하고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한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해양에서 발생하는 페스티로폼 회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어촌형 순환 경제 모델의 개발 등 순환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을 활성화해야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⁷²⁾⁷³⁾

그리고 14.1번 목표인 해양생태계 관리 및 복원의 경우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계획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해양생태계를 관리·복원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적으로는 추진 중인 해양공간계획을 통하여 확보된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토대로 각 해역별 공간 특성에 맞는 해양생태계 관리정책을 추진하는 한편,⁷⁴⁾ 해양생태계의 핵심지역으로 볼 수 있는 갯벌에 대하여 훼손 지역을 대상으로 복원사업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것을 체계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지표 개발

72) 목진용 외, 『해양환경 관리체계 개선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56.

73) 이윤정 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KMI 동향분석 VOL.8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p.15.

74) 최희정·좌미라,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KMI 동향분석 VOL.77, 2018, 3, p.4.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관리와 복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⁷⁵⁾ 한편, 14.3번 목표인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파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시·규제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현황을 조사·평가하고, 해양산성화 방지를 위한 저감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호의 백화현상과 같이 해양산성화와 관련 있는 생태계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해양산성화 저감 관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 개발, 해양 산성화 원인 기여도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등 연안해역 산성화 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⁷⁶⁾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14.2(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서식처의 관리), 14.4(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4.6(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 및 IUU 근절), 14.8(소규모 영세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행위에 대한 지원)번 목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나름 수산자원 관리와 영세어민의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수산자원 서식처의 관리정책은 해양생태계 정책과 연계성이 미흡하였고, 14.2, 14.4, 14.6, 14.8의 이행을 위한 정책도 파편화되어 추진되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수산정책은 자원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영세 어민보호와 불법조업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 어선 감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상호지 지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14.4번 목표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14.7번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확보 및 IUU근절을 위한

75) 해양수산부, “5년간 갯벌 3km² 복원, 연간 195억 원 갯벌가치 되살린다”, 보도자료, 2018.7.9., p.4.

76) 목진용외, 「해양환경 관리체계 개선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p.57-58.

정책은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추진될 경우에는 상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연근해어선의 감척과 TAC 강화를 통한 과도한 어업의 지양,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의 선정과 적용은 정책목표의 설정과 이행, 이행평가 과정이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첨단 양식산업기술, IUU 어업의 예방과 근절, TAC 적용기술은 개도국의 SDGs 이행을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기술이므로 개도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기술로 연구개발과 수출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해양과학기술의 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

14.7 및 14.8번 목표의 이행과 관련된 해양과학기술의 협력과 개도국의 지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기술수준의 증진, 산업혁신 생태계의 조성, 해양사고 저감 및 재해예측시간 단축, 전문인력 양성 등 풍요롭고 안전한 바다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상 명시적인 업무 가운데 하나로 국제협력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 및 과제의 마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한 해양수산 R&D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한 해간 수행한 263개 사업 가운데 ‘해양과학국제연구(해양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익을 창출하고, 국제공동연구를 발굴·추진하여 해양과학 역량 강화)’로 분류된 사업 수는 5개에 해당하였으며, 총 예산 가운데 약 0.7%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⁷⁷⁾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추진사업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분야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볼 때 해양과학기술협력 및 개도국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중요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동안 개도국의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77) https://www.kimst.re.kr/contentFile.do?path=open&fn=20161228_01.xlsx. <검색일자: 2018년 10월 25일>

통합적으로 파악 및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지 않아 이행의 진전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개도국의 협력·지원사업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의 마련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개도국의 지원현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각 개도국별 필요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4.7번 내지 14.A번의 이행사항을 확인함에 있어서도 높은 효과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4. K-SDGs 이행점검·평가체계 구축

한편, FAO 수산분야 협상, WTO 수산보조금협상, 유엔수산결의안, 유엔해양법결의안, IMO 협약 및 결의 등 다양한 국제협약과 협상에서 유엔 SDG 14번의 달성을 위한 법제도 수정 및 정책의 수정·추진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 해양수산부 내에 협업적 정책수립·추진을 위한 (가칭)유엔 SDGs 이행점검 및 평가대책반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K-SDGs의 해양부문 전략의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제3절 해양분야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1.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유엔 SDGs와 이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관리 원칙 및 제도 수단에 대한 근거는 대부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조문에 나타나 있다. 즉,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의 내용인 해양오염 저감,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 해양산성화 감소, 연안 및 해양지역 보전과 관련하여 동법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제6조), 오염물질의 해양유입·배출·처분 관리(제7조),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제16조)과 같이 기존 제도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해양건강성의 평가(제5조),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제15조), 해양기후변화대응(제17조) 등 신규 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률로는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담은 내용을 구체화시키기에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문의 개수가 충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환경관리법」은 환경관리해역, 선박 오염물질 관리, 해양폐기물 관리 등 방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나, 각 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실현수단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분법화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상황이므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법률의 경우 SDGs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법」을 기초로 기존 법률과 신규 법률에 유엔 SDGs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⁷⁸⁾ 즉, 해양오염감소 및 해양산성화의 경우에는 (가칭)해양폐기물관리법, (가칭)선박오염물질관리법, (가칭)환경관리해역관리법률 등의 법률로,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과 연안-해양지역 보전의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칭)갯벌생태계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원양산업 발전법」,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양식산업발전법」이 2016년 12월 28일에 발의된 후 약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⁷⁹⁾ 현재 양식업 관련 사항이 「수산업법」과 「내

78) 박광동 외,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 동아법학 제8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8., p.262.

79)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은 2016년 12월 28일에 발의되어 제20대 제347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2018년 10월 말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기반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안 제25조에서는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양식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이다.

3. 해양과학기술 협력과 개도국의 지원

국내 과학기술협력 및 개도국 지원과 관련된 법률들은 해양과학기술육성, 국제개발협력, 남북교류협력 등 전반적인 국제협력과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력 수단,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이 결여되어 있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렵게 되어 있다.

국내 과학기술협력 및 개도국 지원과 관련된 법률들은 해양과학기술육성, 국제개발협력, 남북교류협력 등 전반적인 국제협력과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력 수단,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여되어 있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해양분야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해양분야 과학기술협력 및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한 사업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추진사업분야 가운데 해양분야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즉, 농림수산, 범분야(환경, 성평등, 인권) 등 각 분야의 일부분으로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분야에서 2015년부터 추진된 8개 사업 가운데 ‘카리브국가연합 기후변화가 모래 해안선에 미치는 영향 : 대안적 관리방안 (‘17-’18/344.3만 불)’ 사업

이 해양분야에서 수행된 유일한 개발원조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⁸⁰⁾ 또한, 농림수산분야에서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19개 사업 가운데 수산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은 ‘알제리 새 우양식 사료 제조역량 강화 사업(‘18-’20/290만 불)’ 한 가지에 해당하였다.⁸¹⁾ 이처럼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 가운데 해양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하며, 일부 수산업 증진을 위한 사업만이 ‘농림수산’ 분야로 명시적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들 법률의 하위법령, 고시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 분야 과학기술협력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근거규정의 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⁸²⁾,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⁸³⁾ 등을 제정하여 국가연안의 해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해역별 상이한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저 및 하층토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원양산업발전법」⁸⁴⁾의 제정을 통해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이행협정(UNFSA)’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⁸⁵⁾ 한편,

80) <http://www.koica.go.kr/program/type/communication/environment/index.html>. (검색일자 : 2018.10.25.)

81) <http://www.koica.go.kr/program/type/rural/index.html>. (검색일자 : 2018.10.25.)

82) [시행 2017.3.21.] [법률 제14607호, 2017.3.21., 일부개정].

83) [시행 2017.3.21.] [법률 제14605호, 2017.3.21., 일부개정].

84) [시행 2017.4.22.] [법률 제14741호, 2017.3.21., 일부개정].

85) 정식 명칭은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UNFSA)’로 1995년 채택되어 2001년 발효 수산자원 관리의 예방적 접근방법 적용,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거나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동의하는 국가만이 해당 협약수역에서 조업할 권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⁸⁶⁾의 제정을 통해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내법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상의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해양자원의 적정한 이용·개발 및 해양환경보전 등을 위한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뿐 아니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이행규정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K-SDGs의 이행전략(안)에는 14.C번 목표인 유엔해양법협약의 이행을 통한 해양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별도의 목표나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최근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제문서의 마련(BBNJ)’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는 공해 및 심해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측면에서 SDG 14번 목표와 전체적으로 연관될 뿐 아니라 세부목표 14.C번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BBNJ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신 해양환경질서의 형성에 관한 이슈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가칭)유엔 BBNJ 정부대책반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전문적인 인력양성, 적극적인 학계 및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해양환경에 관한 이행협정의 마련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이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을 가진다는 내용과 기국의 의무 및 타국 정부 선박에 의한 어선 승선검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50개의 조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 해양수산부 공식 홈페이지 참조. <http://www.mof.go.kr/dictionary/view.do?menuKey=328&dictionaryKey=62>. (검색일자 : 2018.10.25.)

86)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관계부처 합동, 「K-SDG 이행계획(초안)」, 2018.11.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요약본]」, 2014.6.
-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7.
- 목진용 외, 「해양환경 관리체계 개선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 박광동 외,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 동아법학 제80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8.
- 외교부, “SDG 14 이행지지를 위한 유엔 고위급회의(Ocean Conference) 결과보고”, 2017.6.
- 윤유리,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Ⅱ」, 개발과 이슈 제39호, 2017.12.
- 이윤정 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KMI 동향분석 VOL.8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 최희정·좌미라,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KMI 동향분석」 VOL.77, 2018.3.
-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역, 「2017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보고서」, 201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13.12.
- 한국행정학회, K-SDGs 수립경과와 세부목표, 지표(안) 발표자료, 2018.6.21.

- 해양수산부, 2016년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통계 분석, 2017.2.
- 해양수산부, “산호 활용해 해양 산성화 진단한다”, 보도자료, 2015.10.13.
- 해양수산부, “울산연안, 광양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추진”, 보도자료, 2016.4.18.
-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배출 급감...배출해역 환경 개선”, 보도자료, 2016.2.26.
- 해양수산부, “해수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양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추진 박차”,
보도자료, 2015.11.16.
- 해양수산부,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지역별 맞춤형 관리체계 가동한다”, 보도자료,
2018.1.31.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2018.
- 해양수산부, 『선박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정책연구』, 2017.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이행성과 연구』, 2018.3.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항만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18.7.9.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5년간 갯벌 3km² 복원, 연간 195억 원 갯벌가치 되살린다”,
2018.7.9.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어촌뉴딜300사업, 우리 어촌도 신청할 수 있을까?”, 2018.9.11.
- 해양수산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6-122호, 2016.
- 환경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작업반 착수설명회 자료집』, 2018.4.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2014.
- 환경부, 보도자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으세요, 2018.6.7.

<해외문헌>

UN,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8

UNEP CBD, An Updated Synthesis of the Impacts of Ocean Acidification on Marine Biodiversity, CBD Technical Series No.75, 2014

UNGA, A/RES/70/1.

UNGA A/RES/71/312, Our Ocean, Our Future: Call for Action

UN,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8

UN-OHRLL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Numbers: Biodiversity & Oceans』, 2017.

<인터넷 자료>

<https://blog.naver.com/koreamof/220932098774>. (검색일자 : 2018.10.25.)

<http://www.ecosea.go.kr/management/mpa/management/mpa04.do>. (검색일자 : 2018.09.10.)

http://www.ecosea.go.kr/mpa_domcondi/mpa/condi/mpa02.do. (검색일자 : 2018.09.10.)

<https://oceanconference.un.org/commitments/> (검색일자 : 2018.09.10.)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176> (검색일자 : 2018.10.26.)

<http://in.one.un.org/page/sustainable-development-goals/sdg-14/> (검색일자 : 2018.08.03.)

https://www.kimst.re.kr/contentFile.do?path=open&fn=20161228_01.xlsx. (검색일자 : 2018.10.25.)

https://kiost.ac.kr/cop/bbs/BBSMSTR_00000000011/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9FF77BF9655D66FE309FC0E00AB0468?ntfId=16851&pageIndex=2&searchCnd=&searchWrd=. (검색일자 : 2018.08.23.)

<http://www.koica.go.kr/program/type/communication/environment/index.html>. (검색일자 : 2018.10.25.)

<http://www.koica.go.kr/program/type/rural/index.html>. (검색일자 : 2018.10.2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J6F1D2O2F8B1L6Y0V3Y2W0R1X0K6 (검색일자 : 2018.10.28.)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79225§ion=sc118§ion2=%EC%A0%95%EC%B9%98%EC%9D%BC%EB%B0%98. (검색일자 : 2018.10.01.)

<http://www.mof.go.kr/dictionary/view.do?menuKey=328&dictionaryKey=62>. (검색일자 : 2018.10.25.)

<http://ncsd.go.kr/app/board/mgosWsView.do> (검색일자 : 2018.10.3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4_0000399712&cID=10401&pID=10400. (검색일자 : 2018.10.25.)

<https://www.sciencedaily.com/releases/2018/07/180728083507.htm>. (검색일자 : 2018.08.26.)

<https://sdg.data.gov/life-below-water/>. (검색일자 : 2018.08.20.)

<https://sdgcafrica.org/overview/>. (검색일자 : 2018.08.28.)

<https://sdg.data.gov/14-4-1/>. (검색일자 : 2018.08.22.)

<https://sdg.data.gov/14-5-1/>. (검색일자 : 2018.08.22.)

<http://www.sids2014.org/>. (검색일자 : 2018.08.26.)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445JapanVNR2017.pdf>. (검색일자 : 2018.08.28.)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mberstates/japan>. (검색일자 : 2018.08.20.)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ids2014/samoopathway>;

<http://www.2030caribbean.org/content/unct/caribbean/en/home/sustainable-development-goals/samoa-pathway.html> 참고. (검색일자 : 2018.08.26.)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topics/sids>. (검색일자 : 2018.08.2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70275&cid=40942&categoryId=32411>. (검색일자 : 2018.10.01.)

https://www.uneca.org/sites/default/files/uploaded-documents/SDG/africa_region. (검색일자 : 2018.08.26.)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oceans/> (검색일자 : 2018.08.1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291421/files/A_RES_71_312-EN.pdf (검색일자 : 2018.10.1.)

<https://unstats.un.org/sdgs/files/report/2018/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Report2018-EN.pdf>
(검색일자 : 2018.11.1.)

기후변화법제 연구 18-17-⑫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해양
- 해양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2018년 10월 28일 인쇄
2018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 이 익 현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924-6 93360

저자명(책임)

박 수 진

학 력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국가남극정책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생명자원 법령 재정비 방안 연구
나고야 의정서의 글로벌 다자이익 공유체제 (GMSM)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고찰
국가 해양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연구
유엔 BBNJ회의의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에 관한 고찰

저자명(공동)

최 석 문

학 력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법 석사
(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연구실적 및 논문

해양환경 관리체계 개선 연구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방안 연구
갯벌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김 대 경

학 력

University of Edinburgh 법학석사
(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해양환경외교의 과제 및 대응방안 연구
2017년 BBNJ 준비위원회 의제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국가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가 해양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연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해양

해양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9 788966 849246

ISBN 978-89-6684-924-6

값 7,000원